

지성(至誠) · 협동(協同)

꿈 · 땀 · 열정으로 이상을 실현하는 청명고등학교

2021학년도

# 학부모총회 안내자료



청 명 고 등 학 교

Cheongmyeong High School

<http://www.cm-h.hs.kr/>



## 인사말씀

찬 기운 속에서도 새싹이 움트는 3월,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2, 3학년들의 밝은 모습으로 청명고등학교의 교정은 봄날입니다. 청명고등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새로운 융복합 시대에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온 교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며 도전하는 사람! **땀**의 가치를 알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며 성장하는 사람! **열정**을 품고 소통과 협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청명고등학교가 육성하고자 하는 청명인입니다.

청명고등학교는 이러한 청명인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 핵심 역량 5C!**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사고를 심화·확장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창의력(Creativity)**입니다. 협업은 다양한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셋째, **협업(Collaboration)**입니다. 협업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넷째, **소통(Communication)**입니다. 소통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소양(Cultural literacy)**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청명고등학교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이러한 미래 핵심 역량의 함양에 두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교육과정, ‘땀’을 소중히 하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열정’으로 함께하는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이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으로 구성된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배움으로 학생들이 성장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 학생들의 오늘과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학교! 청명고등학교입니다. 청명고등학교의 변화와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021. 3. 24.

청명고등학교장 이 상 기

# 교 가

윤석중 작사  
김광휘 작곡

부드럽게



# 목 차

I . 학교 소개 .....	1
II .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	2
III . 학년별 운영 계획	
1학년 .....	4
2학년 .....	6
3학년 .....	8
IV . 2022 입시 안내 .....	15
V . 2020학년도 교육활동 안내	
1. 학사일정 .....	24
2. 일과운영표 .....	26
3. 교육과정 편제표 .....	27
4. 교내 시상 계획 .....	31
5.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	33
6. 교육과정 클러스터 .....	35
7. 주문형 강좌 .....	36
8. 창의적 체험활동 일정 .....	37
9. 실력향상 학습 프로젝트 .....	39
10. 사제 동행 북 콘서트 .....	40

## Ⅴ. 각종 규정 안내

1. 출결 규정 안내	41
2. 현장체험학습 신청 안내	44
3. 성적처리규정안내	55
4.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	59

## Ⅵ. 학부모 연수

1. 학교, 성,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67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71
3. 가정폭력 예방 교육	72
4.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78
5. 학생인권교육	81
6. 교육활동침해 교육	84
7. 학생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86
8. 감염병 예방 교육	90
9. 본교 응급환자 후송 기준 안내	92
10.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교육	93
11. 장애 인식개선(이해) 교육	96
12. 정보통신 윤리 교육 자료	98
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108
14. 청탁금지법 안내	110
15. 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111
16. 학교 전자계약 안내	113
17. 학부모회 운영 안내	114

[부록] 학교 학급 교실 배치도	115
-------------------	-----





# 학교 소개

## 1 학교 현황

1. 학교연혁	2. 학생현황					3. 교직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01.15. 설립 인가(36학급)</li> <li>• 1998.03.01. 초대 윤석중 교장 취임</li> <li>• 2001.02.07. 제 1회 졸업식(590명)</li> <li>• 2020.09.01. 제8대 이상기 교장 취임</li> <li>• 2021.01.05. 제 21회 졸업식 (235명, 누적 11,573명)</li> <li>• 2021.03.05. 신입생 290명 입학</li> </ul>	학년	학급수	남	여	계	교장	교감	수석 교사	부장 교사	교사	소계	총계
	1	12(1)	134	156	290	1	1	1	13	67	83	104
	2	13(1)	157	165	322	행정 실장	교육 행정	교육 공무직	소계	21		
	3	13	161	176	337							
	계	38(2)	452	497	949	1	5	15	21			

## 2 교훈

**지성(至誠) · 협동(協同)**

## 3 학교 상징

교목(校木) 소나무	교화(校花) 개나리	교조(校鳥) 학
		
정직, 강건, 의지, 청렴	희망, 순결, 깨끗한 마음	평화, 행복, 행운

## 1 교육목표

1. **꿈!** 꿈을 향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며 도전하는 사람
2. **땀!** 땀의 가치를 알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며 성장하는 사람
3. **열정!** 열정을 품고 **소통**과 **협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 2 청명의 미래 핵심 역량 5C



1.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사고를 심화, 확장하는 능력
2. 창의력(Creativity)  
다양한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3. 협업(Collaboration)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4. 소통(Communication)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5. 문화적 소양(Cultural Literacy)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가.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1. 학생 중심 교육과정 클러스터 및 주문형 강좌 운영
2.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 나눔 프로젝트

**나. 창의력(Creativity)**

1. 탐구의 힘을 배우는 과학 인재 육성 프로젝트
2.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는 수학 과학 체험전

**다. 협업(Collaboration)**

1. 땀의 가치를 배우는 가족 봉사단 프로그램
2.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생 자치 활동

**라. 소통(Communication)**

1. 세계와 함께하는 국제 자매학교 교류 프로그램
2. 미래의 나를 그리는 진로진학 코칭 캠프

**마. 문화적 소양(Cultural Literacy)**

1. 동서양의 고전을 만나는 청명 인문학 축제
2. 책과 함께 걷는 사제동행 북 콘서트



# 1학년 운영 계획

## 1 1학년 조직현황

### 가. 학급 편성 현황

반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재적	24	25	25	25	25	23	24	23	23	24	25	23	290
계열	공통과정												
성별	남학생 : 134						여학생 : 156						290

### 나. 학급 담임 및 담당교과

학급	재적	담임교사	교과	전화번호	학급	재적	담임교사	교과	전화번호
부장	290	정*영	미술	201-9640	7	24	이*현	음악	201-9647
1	24	최*진	국어	201-9641	8	23	이*호	수학	201-9648
2	25	이*혜	수학	201-9642	9	23	장*숙	생물	201-9649
3	25	이*덕	가정	201-9643	10	24	한*진	국어	201-9650
4	25	서*희	국어	201-9644	11	25	김*현	역사	201-9651
5	25	고*현	영어	201-9645	12	23	권*희	영어	201-9652
6	24	최*원	지학	201-9646	특수 학급	4	유*아	특수	201-9772

### 다. 교육과정 및 교과 담당교사

교과	주당 시수	지도교사	교과	주당 시수	지도교사
국어	4	서*희, 최*진, 한*진	체육	1	김*욱, 오*현
수학	4	이*혜, 이*호, 안*리	미술	3	정*영, 윤*영
영어	4	권*희, 고*현, 방*형	음악	3	이*현, 김*은
한국사	3	김*현, 이*희	기술·가정	2	김*희, 이*덕
통합사회	3	이*호, 이*훈, 김*연, 이*동	정보	2	김*연, 전*신
통합과학	3	장*숙, 최*원, 김*선, 류*호, 유*희, 노*애, 장*경	진로	1	이*섭
과학탐구 실험	1	장*숙, 김*선, 노*애	X		

## 2 1학년 학업 관리 계획

### 가. 정기고사 및 학력평가 실시 계획

1) 정기고사 : 1, 2학기 1차 지필, 2차 지필 연 4회

구 분	1학기	2학기
1차 지필	2021. 4. 26.(월) ~ 2021. 4. 29.(목)	2021. 10. 4.(월) ~ 2021. 10. 7.(목)
2차 지필	2021. 6. 28.(월) ~ 2021. 7. 2.(금)	2021. 12. 6.(월) ~ 2020. 12. 10.(금)

2) 전국연합학력평가 : 연 2회

시행일	구 분
6월 3일(목)	국어 / 수학 / 영어 / 한국사 / 사회탐구 / 과학탐구
11월 24일(수)	국어 / 수학 / 영어 / 한국사 / 사회탐구 / 과학탐구

※ 시험 시행 횟수 및 시행일은 추후 주관교육청에 따라 조정 가능



## 2학년 운영 계획

### 1 2학년 조직현황

#### 가. 학급 편성 현황

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재적	25	25	25	25	25	23	25	25	25	24	25	25	25	322
계열	공통과정													
성별	남학생 : 157						여학생 : 165						322	

#### 나. 학급 담임 및 담당 교과

학급	재적	담당교사	교과	전화번호	학급	재적	담당교사	교과	전화번호
부장	339	이*호	지리	201-9660	8	26	이*연	체육	201-9668
1	26	곽*경	국어	201-9661	9	25	권*	일반사회	201-9669
2	26	강*련	일본어	201-9662	10	26	박*주	수학	201-9670
3	26	최*리	생명과학	201-9663	11	26	김*욱	중국어	201-9671
4	26	배*우	영어	201-9664	12	26	황*정	영어	201-9672
5	27	구*자	수학	201-9665	13	26	심*수	국어	201-9673
6	26	장*경	물리	201-9666	특수 학급	3	주*환	특수	201-9770
7	26	이*희	국어	201-9667		이	하	여	백

## 다. 교육과정 및 교과 담당교사

구분	교과	과목(단위수)	1학기	2학기	담당 선생님
기초	국어	문학	0		김*신 곽*경 이*희 심*수
		독서		0	김*신 곽*경 이*희 심*수
		고전읽기	0	0	김*신 임*준
	수학	수학 I	0		구*자 박*주 장*혜
		수학 II		0	구*자 박*주 장*혜
		확률과 통계	0	0	장*혜 안*름
		수학과제탐구	0	0	김*경 안*름
	영어	영어 I	0		배*우 이*정 김*아 황*정
		영어 II		0	배*우 이*정 김*아 황*정
영미문학읽기		0	0	이*정	
탐구	사회	정치와 법	0	0	권*
		세계사	0	0	이*동
		한국지리	0	0	이*호
		생활과 윤리	0	0	김*식 곽*영 최*묵
	과학	물리학 I	0	0	장*혜
		화학 I	0	0	노*애
		생명과학 I	0	0	장*숙 최*리
		지구과학 I	0	0	최*원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0	0	이*연 차*선
생활.교양	제2외국어 /한문	일본어 I	0	0	신*경 강*련
		중국어 I	0	0	김*욱

## 2 2학년 학업관리 계획

### 가. 정기고사 및 학력평가 실시 계획

1) 정기고사 : 1, 2학기 1차 지필, 2차 지필 연 4회

구분	1학기	2학기
1차 지필	2021. 4. 26.(월) ~ 2021. 4. 29.(목)	2021. 10. 4.(월) ~ 2021. 10. 7.(목)
2차 지필	2021. 6. 28.(월) ~ 2021. 7. 2.(금)	2021. 12. 6.(월) ~ 2021. 12. 10.(금)

2) 전국연합 학력평가 : 연 2회

시행일	구분
6월 3일(목)	국어 / 수학 / 영어 / 한국사 / 사회탐구 / 과학탐구
11월 24일(수)	국어 / 수학 / 영어 / 한국사 / 사회탐구 / 과학탐구

※ 시험 시행 횟수 및 시행일은 추후 주관교육청에 따라 조정 가능

### 가. 목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의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학력을 향상시키고, 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며, 바람직한 기본 생활습관을 철저히 지도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한다.

### 나. 운영방침

#### 1) 학력 지도

- 가) 꾸준한 학력 향상 방안 강구 및 자기주도 학습 태도의 정착 지도
- 나) 각종 고사 결과의 분석과 활용을 통한 학력 신장 지도
- 다) 방과후학교 시간 확보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 라) 다양한 대학별 고사 자료의 활용과 운영을 통한 대학별 고사 준비 지도

#### 2) 진로 지도

- 가) 대학입시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맞춤형 진학 지도
- 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대학 및 전공 학과에 대한 선택지도
- 다) 담임교사의 상담 활동을 통한 학생 이해와 선도
- 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 선택지도

#### 3) 생활 지도

- 가) 남녀 공학에 따른 건전한 이성 관계 형성 지도
- 나)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생활 지도
- 다) 주변 정리 정돈 습관 및 청결한 생활을 위한 환경 지도
- 라) 생활지도, 상담 및 훈화 지도의 지속적 실시를 통한 학생 사고의 사전 예방
- 마)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인성지도

### 다. 노력중점

- 1) 대입 제도에 맞는 대책 수립 및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 2) 꾸준한 학력 향상 방안 강구 및 자기주도 학습 태도의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 3)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 생활 습관 지도를 통한 생활 지도의 내실화
- 4)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통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지도 충실
- 5)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적절한 시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 6) 공정하고 신뢰감을 주는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의 실시

## 가. 교육과정

과목 · 내용	공통	
	1학기	2학기
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 중 택1	4	4
경제수학 / 미적분 중 택1	3	3
현대문학감상 / 기하 / 심화영어독해 I 중 택1	2	2
경제 / 윤리와 사상 / 세계지리 / 동아시아사 / 사회문화 물리학Ⅱ / 화학Ⅱ / 생명과학Ⅱ / 지구과학Ⅱ 중 택3	3×3=9	3×3=9
스포츠생활	2	2
영어 독해와 작문	4	4
음악 감상과 비평 / 미술 감상과 비평 중 택1	2	2
한문 I	2	2
사회탐구문제 / 생활과 과학 / 프로그래밍 / 중국어Ⅱ / 일본어Ⅱ 중 택1	2	2
총 이수 단위	30	30

## 나. 학급편성

계열	공통													계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	10반	11반	12반	13반	
반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	10반	11반	12반	13반	계
재적	26	26	26	26	26	25	26	26	26	26	26	26	26	337
남	5	21	5	12	10	13	11	19	16	5	17	15	12	161
여	21	5	21	14	16	12	15	7	10	21	9	11	14	176
학급 배정 기준 (학급공통교과)	현대문학감상 화법과작문	기하 화법과작문 미적분	화법과작문 경제수학 사회문화	현대문학감상 경제수학 윤리와사상		미적분	현대문학감상 경제수학 사회문화	화학	화법과작문 생명과학Ⅱ	미술 경제수학 동아시아사	기하 언어와매체			
선택교과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미적분, 경제수학, 현대문학감상, 기하, 심화영어독해 I,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경제, 세계지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사회탐구문제, 생활과학, 프로그래밍, 일본어Ⅱ, 중국어Ⅱ는 선택교과별 이동수업													
선택교과 외 교과	계열 구분 없이 공통													

다. 3학년 학급 담임 및 업무 분장

구분 학급	성 명	인원	교과	전화번호	담 당 업 무	
부장	류*호		물리	201-9680	학년운영 총괄	
3-1	오*열	26	국어	201-9681	생활지도 수능	3학년부 생활지도/수능업무
3-2	김*현	27	국어	201-9682	학년수업계 성적계	수업교환/고사결시파악/총무(여)/ 정기고사·수행평가 성적 자료 취합
3-3	임*리	26	일반 사회	201-9683	수능이후 프로그램	무료원서관리/봉사활동/교육과정부업무 지원/수능이후프로그램
3-4	최*묵	25	윤리	201-9684	장학	장학생추천/표창/수상/사정회
3-5	이*일	25	한문	201-9685	진학	진학/진학자료취합/UNIV/총무/입시취합· 분석
3-6	최*영	24	수학	201-9686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졸업대장
3-7	이*윤	24	수학	201-9687	생활지도	3학년부 생활지도/학교폭력관련업무/ 선도위원회관련업무/총무(남)
3-8	유*희	25	지구 과학	201-9688	위탁	직업위탁교육/부서자료취합/과학업무 지원
3-9	김*아	24	생명 과학	201-9689	졸업앨범	앨범/모의면접
3-10	김*진	28	역사	201-9690	진학	진학/학부모총회/입시설명회 /대학별고사(모의논술 등), 입시요강정리
3-11	김*명	28	수학	201-9691	모의고사	모의고사/방과후
3-12	허*선	27	한문	201-9692	출결/학적	출결관리/출석부관리/공결대장
3-13	양*진	26	영어	201-9693	전학공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학교장)추천입학 관리
특수 학급	유*아	3	특수	201-9772	특수학급	특수학급 지도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역사	사회	윤리	지학	생명	화학	물리	한문	계
남	1	2	0	1		1				1	1	7
여	1	1	1		1		1	1			1	7
계	2	3	1	1	1	1	1	1		1	2	14

라. 2020학년도 주요 학사일정

학기	월	3학년 주요 일정	평가 및 입시 일정
1학기	3	개학(5)	학부모 총회(24) 전국연합(서울, 25)
	4		개교기념일(재량휴업, 6), 전국연합(경기, 14) 1차 지필평가(26~29)
	5		
	6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3) 2차 지필평가(28~30)
	7	졸업앨범 촬영 여름방학식(20)	2차 지필평가(1~2) 학력평가(인천, 7)
	8	진학상담/ 자소서 쓰기 개학식(12)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31)	개학식(12) 수능원서제출(8/19~9/3)
2학기	9	진학상담 모의면접	대수능 모의평가(교육과정평가원)(1) 수시 원서 접수기간(3일)(10~14) (전문대 1차 9/20~10/4) 9/15~12/15 수시 전형
	10		전문대 2차 수시 원서접수 기간(10/14~12/7)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4~7) 전국연합학력평가(10/27)
	11	11.30 정시학생부 작성 마감 수능 가채점 및 정시 진학지도 수능 이후 프로그램 운영	<b>대학수학능력시험(11/18)</b> 2학기 2차 지필고사(22~26)
	12	졸업식(12/31)	수능성적 발표(12/10) 2021.12.30.~2022. 1. 3. 정시 원서 접수(3일)
	1		
	2		정시 합격자 발표(2/8) 정시 합격자 등록기간(2/9~11)

### 3 3학년 각종 활동 계획

#### 가. 월별 중점 활동

월	중점 교육	월	중점 교육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 운영 계획 수립</li> <li>□ 학생 건강상태 파악</li> <li>□ 가정학습 전화 상담 지도</li> <li>□ 온라인클래스 개설관리</li> <li>□ 온라인학습 학생별 파악 및 피드백</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 원서 접수</li> <li>□ 수능 대비 교과별 마무리 지도</li> <li>□ 모의 면접 실시</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적 학습 분위기 조성</li> <li>□ 기본생활 습관 지도의 정착</li> <li>□ 학생들의 개인 신상 파악</li> <li>□ 학급회, 동아리활동 구성</li> <li>□ 대학 진학 희망 조사</li> <li>□ 개인별 중간 학습 점검</li> <li>□ 2022 입시제도 안내</li> <li>□ 진학 게시판 활용 및 대입 홍보</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이후 활동 계획안 수립</li> <li>□ 수능 과목별 최종 점검 확인</li> <li>□ 수능 대비 교과별 마무리 지도</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생활 기록부 점검</li> <li>□ 정시를 위한 배치표 작성</li> <li>□ 학생 생활 기록부 점검</li> <li>□ 수능 대비 교과별 마무리 지도</li> <li>□ 수능 이후 활동 안내</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생활 기록부 정정</li> <li>□ 앨범 구입 희망원</li> <li>□ 학생부 종합 대비를 위한 상담</li> <li>□ 학력 중간 점검 및 반성</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출정식</li> <li>□ 대학수학능력 시험</li> <li>□ 면접 지도</li> <li>□ 정시 대입 상담 및 정시 원서 작성</li> <li>□ 졸업식</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앨범 사진 촬영(개인)</li> <li>□ 대수능 모의평가 결과 분석</li> <li>□ 교과 영역별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수업 내실화</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 전형(가, 나, 다 군)</li> <li>□ 수시 합격자 통계 작성</li> <li>□ 대학 등록 및 진로 지도</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학기 수시 전형 준비</li> <li>□ 2학기 학습 계획 수립 및 점검</li> <li>□ 학생 생활 기록부 점검</li> <li>□ 교과 영역별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수업 내실화</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시 합격자 확인</li> <li>□ 정시 대학 추가 모집 지도</li> <li>□ 학생 생활 기록부 이관</li> <li>□ 각종 업무 확인 및 마무리</li> <li>□ 정시 합격자 통계 작성</li> </ul>

## 나. 생활 지도 방안

### 1) 목적

기본 생활 습관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본분을 철저히 알고 지키며, 교칙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준법 정신의 함양과 주변 정리 정돈의 습관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

### 2) 생활 지도의 주안점

- 가) 남녀 공학으로 인한 이성 문제의 조기 지도
- 나)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성실 지도
- 다) 주변 정리 정돈 습관 및 청결한 생활을 위한 환경 지도
- 라) 고3 생활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끊임없는 상담을 통한 지도
- 마) 자주적, 자율적 생활 태도 함양을 위한 도덕관 확립 훈화 교육 지도

### 3) 세부 실천 계획

#### 가) 담임 중심의 생활 지도

내 용	시 기	목 표	담당자
조 .종례 훈화 지도 철저	연중	수시	담임교사, 부장교사
상담 기회 확대	연중	수시	담임교사, 부장교사, 진로상담부,
성취 동기 부여	연중	수시	담임교사
기본 생활 습관 지도	연중	수시	학생부, 담임교사
실내 청결 및 정숙 지도	연중	수시	교과담임교사, 담임교사
건전한 이성관 교육	연중	수시	교과담임교사, 담임교사

#### 나) 개인위생 지도 및 실내 환경 위생 관리

- ① 학교생활에서 감염 예방 수칙 지키기 지도(필요 시까지)
- ② 매일 아침 학생 책걸상 사물함 소독 티슈로 소독
- ③ 학생들이 청소하는 외에도 수시로 담임교사가 교실 청소 미흡한 부분 관리
- ④ 기타 학교 전체 소독 및 방역 철저

#### 다) 실내 정숙을 통한 면학 분위기 지도

- ①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도
- ② 실내 정숙 및 좌측통행 지도
- ③ 식사 예절 지도 및 질서 지도
- ④ 규정 위반 학생 특별 지도

### 4) 운영 방안

- 가) 인사 잘하기 등 예절 교육을 강화한다.
- 나) 지각, 조퇴, 결과, 결석 등을 엄격하게 지도한다.
- 다) 철저한 생활 지도를 바탕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라) 청소 및 분리수거 철저 등 교내 환경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마) 시간 잘 지키기 운동을 전개한다.(수업, 휴식, 자율 학습 시간 등)

## 다. 학습 지도 방안

### 1) 목적

입시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지도한다.

### 2) 목표

가) 내실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나) 문제 해결 능력과 탐구 능력 배양

다) 방과 후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 향상

### 3) 운영 방안

가) 수업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한다.

나) 학생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권장한다.

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한다.

라) 학생들이 각종 교내 수상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한다.

마) 학생 스스로 학습의 목표와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4) 각 교과별 수능 진도 계획 (수능출제 교과만 반영함)

교과별	진도상황	대 책	종료 예정일	비 고
문 학	완료			
독 서	완료			
화법과작문		3학년에서 수업	9월	택1
언어와 매체		3학년에서 수업	9월	
수학 I	완료			
수학 II	완료			
확률과통계	완료			택1
미적분		3학년에서 수업	9월	
기하		3학년에서 수업	9월	
영어 I	완료			절대평가
영어 II	완료			절대평가
한 국 사	완료			절대평가
생활과윤리	완료			
한국지리	완료			
세계사	완료			
정치와 법		3학년에서 수업	9월	
윤리와사상		3학년에서 수업	9월	
세계지리		3학년에서 수업	9월	
경제		3학년에서 수업	9월	
사회문화		3학년에서 수업	9월	
동아시아사		3학년에서 수업	9월	
물리학	물리학 I 완료	물리학 II 3학년에서 수업	9월	
화 학	화학 I 완료	화학 II 3학년에서 수업	9월	
생명과학	생명과학 I 완료	생명과학 II 3학년에서 수업	9월	
지구과학	지구과학 I 완료	지구과학 II 3학년에서 수업	9월	
한문		3학년에서 수업	9월	절대평가
중국어	중국어 I 완료	중국어 II 3학년에서 수업		절대평가
일본어	일본어 I 완료	일본어 II 3학년에서 수업		절대평가

##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

### 가. 2022학년도 정시 모집

- 1) 2022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6,553명으로 2021학년도 347,447명에 비해 소폭감소
- 2) 정시모집 비율은 24.29%로 전년 23.05%에 비해 1.24%p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울의 주요대학은 약 10%가량 증가함.
- 3)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중 국어, 수학의 경우 <공통+선택형> 구조로 변경되는 만큼 선택과목의 중요성이 확대됨.

### 나. 2022학년도 수시 모집

- 1)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인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소폭감소하였으나 서울권 대학교에서는 6~10%가량 감소함.
- 2) 2022학년도에도 수도권에서도 지역균형전형(학교장추천)이 신설되어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수 증가.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148,506	42.85%	146,924명	42.3%
	학생부(종합)	79,503	22.94%	86,083명	24.8%
	논술 위주	11,069	3.19%	11,162명	3.2%
	실기 위주	18,817	5.43%	18,821명	5.4%
	기타(재외국민)	4,483	1.29%	4,384명	1.3%
소계		262,378	75.71%	267,374명	77.0%
정시	수능 위주	75,978	21.92%	70,771명	20.4%
	실기 위주	7,470	2.16%	8,356명	2.4%
	학생부(교과)	201	0.06%	270명	0.1%
	학생부(종합)	347	0.10%	424명	0.1%
	기타(재외국민)	179	0.05%	252명	0.1%
소계		84,175	24.29%	80,073명	23.0%
합계		347,447명	100.0%	347,447명	100.0%

### 다. 논술 모집 인원 감소

2022학년도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33개교에서 36개교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인원은 93명 감소하여 11,096명을 선발

학년도	모집인원	대학 수
2022	11,096명	36개교
2021	11,162명	33개교

라. 적성고사 폐지

- 1) 2022학년도 적성 전형은 폐지되었으며 적성전형을 실시하던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는 논술전형을 실시함.

마. 2022학년도 수능 시행일 : 2021. 11. 18(목)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 수시모집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21.9.10(금)~9.14(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1.9.15.(수)~12.15(수)(92일)
합격자 발표	2021.12.16(목)까지
합격자 등록	2021.12.17(금)~20(월)(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2021.12.27(월) 21시까지
수시 미등록총원 등록마감	2021.12.28(화)

◆ 정시모집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21.12.30(목)~2022.1.3(월) 중 3일 이상	
정시 모집 전형 기간	가군	2022.1.6.(목)~13(목)(8일)
	나군	2022.1.14(금)~21(금)(8일)
	다군	2022.1.22(토)~29(토)(8일)
합격자 발표	2022.2.8(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2.2.9(수)~11(금)(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2022.2.20(일) 21시까지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마감	2022.2.21(월)	
추가모집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발표	2022.2.22(화)~27(일) 21시까지	
추가모집 등록마감	2022.2.28(월)	

□ 2022 이후 대입의 변화 이해하기

## 2022이후(2024대입 포함) 대입 핵심 5+1

2015 개정교육과정 1,2학년 교과 성적  
대입 영향력 커짐

2015 개정교육과정 수능 체제 변화  
국, 수: 공통+선택과목  
탐구: 계열 구분폐지

대입공정성 강화  
학생부 기재 축소  
- 서류 간소화, 투명성

대입공정성 강화  
지역균형확대: 수도권대학  
(학교장 추천: 교과위주 전형)  
지역인재확대: 수도권이외

대입공정성 강화  
정시모집 비율변화  
수도권 대학: 증가  
수도권 이외대학: 다름  
농어촌 전형 변화

기타

- 6년제 약대 신설모집, 의대 증원
- 정시 군 이동, 적성고사 폐지

## 대입 수능 체제 변화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 폐지, 선택과목 확대

구분(영역)	2022학년 대입 이후	비고	문항수/시간	유형	배점	
수능출제범위	국어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택 1)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공통 (선택과목 점수 조정 후 단일집단으로 상대평가 9등급제)	45문항/80분 (공통 34문항, 선택 11문항)	5지선다	2/3
	수학	공통: 수학 I, 수학 II 선택: (택 1)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주요대학 수학 선택과목 지정 자연계열과: 미적분/기하 택1)		30문항/100분 공통 22문항, 선택 8문항	객: 21문항 단답: 9문항	2/3/4
	영어	공통: 영어 I, 영어 II	공통 (절대평가 9등급제)	45문항/70분 (듣기 17문항)	5지선다	2/3
	한국사	한국사	필수지정 (절대평가 9등급제)	20문항/30분	5지선다	2/3
	탐구	일반: 계열 구분없이 택 2 • 17과목 (사회: 9, 과학: 8) 직업: 성공적인 직업생활 +5과목 중 택 1	(과목별 상대평가 9등급제) (대학별 과탐 선택수 지정- 자연계열 학과: 과탐 2과목 또는 과탐 1과목 반영)	과목당 20문항 / 30분	5지선다	2/3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 1	(절대평가 9등급제) 주로 인문사회계열응시	과목당 30문항 / 40분	5지선다	1/2

과제/전형연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1	<b>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b>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금지, 수상경력 대입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b>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b>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 자기소개서 개선(문항 및 글자 수 축소) · 교사추천서 폐지		· 자기소개서 폐지
2	<b>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b>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등 정보공시 확대 · 학생부중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b>학종 운영의 전문성강화</b> ·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신입, 경력 모두 40시간			
3	<b>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b>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0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b>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b>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b>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 전형폐지</b>			

구분	2021학년도(졸업)	2022~2023학년도(고3~고2)	2024학년도(고1)
자기소개서	현행 서식 (4개 문항 5,000자)	서식 간소화 및 개선 (3개 문항 3,100자)	폐지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기재 개선 '22학년도 대입 반영		
교사추천서	현행유지	폐지	폐지
대학별고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단계적 폐지유도</li> <li>적성고사 대학자율(최소화 유도)</li> <li>대입 블라인드 평가(면접)</li> <li>고교프로파일 폐지</li> <li>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li> <li>적성고사 폐지</li> <li>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 원칙</li> <li>대입 블라인드 서류평가+면접평가 확대</li> <li>고교프로파일 폐지</li> <li>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이상 의무화, 지역균형선발 수도권대학 10%이상 권고</li> </ul>	

구분	2021대입(졸업)	2022~2023 대입 (고3~고2)	2024대입~(고1~)	
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b>미반영</b>	
종합의견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비교과영역	자율활동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 연간 500자 · 정규·자율동아리, 청소년 단체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대입 <b>미반영</b>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연간 500자 · 실적 및 특기사항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실적 대입 <b>미반영</b> .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b>미반영</b>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b>미반영</b>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b>미반영</b>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도서명과저자	· 대입 <b>미반영</b>

□ 대입 전형의 체제 이해하기

### 대입전형 표준화 4+2체제

알기 쉽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전형 요소 위주로 대입전형을 표준화 함.

**STEP 01**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

- 학생부교과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 논술위주전형
- 실기/실적전형

3학년 9월 원서접수  
전형수 6회 지원가능 +

3학년  
2학기  
과정후  
(시기=  
수능  
성적  
발표)

**STEP 02**

**정시모집**

- 수능위주전형
- 실기/실적전형

12월 원서접수  
(가나다)군별 1회 가능

복수 지원 제한 예외 대학 +

- 산업대학(청운대, 호원대), 전문대학,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 지역인재 전형 확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 등

### 대입전형의 종류 및 주요 특징

교과 성적(50%이상)

+  
수능 최저\*

(면접 + 학생부)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 역량

+  
비교과활동, 면접(일부)

+  
수능 최저\*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

대입  
전형

교과 역량

+  
논술 역량(50% 이상)

+  
수능 최저\*

논술  
전형

정시  
수능전형

+  
수능 성적 (50% 이상)

교과 역량(일부)

\*수능최저(=수능 최저 학력 기준):대학별로 입시 지원자들에게 정해 놓은 수능 성적의 하한선(등급).

## 2022 대입 수능 등급 이해



### 1. 상대평가 과목의 등급

-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등급은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수험생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9등급제로 부여함.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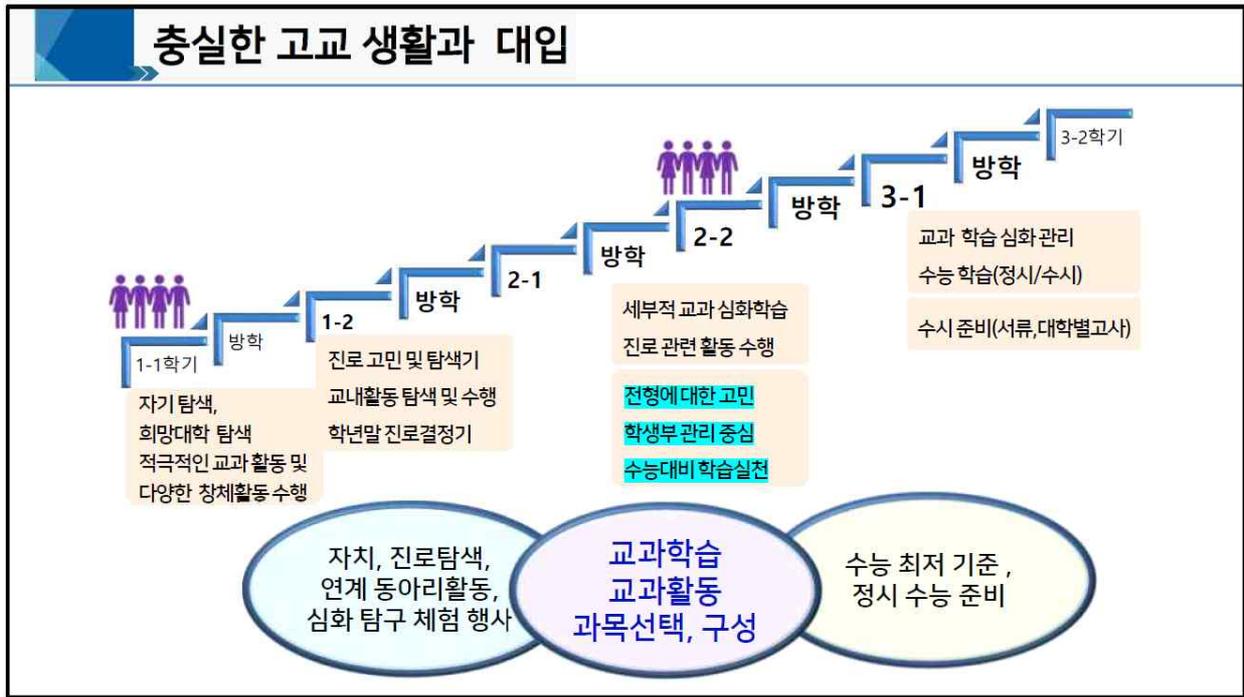


### 2. 절대평가 과목의 등급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의 등급은 **원점수**에 따라 구분함.

등급	1	2	3	4	5	6	7	8	9
영어	90	80	70	60	50	40	30	20	0
한국사	40	35	30	25	20	15	10	5	0
제2외국어/ 한문	45	40	35	30	25	20	15	10	0

□ 학년별 대입 준비와 성공적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생활



## 미리 보는 고3 입시 일정(예정)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9월 모평	10월 학평	수능
3.25(목)	4.14(수)	6.3(목)	7.7(수)	9.1(수)	10.12(화)	11.18(목)

수시 접수	수능 성적발표	수시 최초합격 발표	수시 총원합격 발표
9.10(금)~14(화)	12.2(수)	12.16(목)	12.21(화)~27(월) (7일간)

정시 접수	정시 최초합격 발표	정시 총원합격 발표
12.30(목)~1.3(월)	2.8(화)	2.12(토)~20(일)(9일간)

## 학년별 대학전형 준비

### 2학년 1학기

- 계열 및 학부를 염두에 둔 교과/동아리활동 고민
- 희망 계열에 어울리는 수상 + 교과 + 동아리 활동 참여
- 전공 과목 2등급 이내의 내신관리 필요(전공적합성)
- 비전공 과목 4등급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의
-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 인문/사회/자연/공학/예술/경제 등 희망 직군 관련 독서 심화

3월~4월  
신학기 준비  
한 학기의 학교활동 계획  
(연간학사일정 참고)

5월~6월  
교내에서 행사를 주도하는 역할  
(동아리, 대회, 체험학습 등)  
해당 학년 대입전형계획 발표  
적극적인 교과세특활동

7~8월  
독서 기회 많이 갖기  
2학기 활동계획 세우기  
2학기 과목 사전 숙지

## 학년별 대학전형 준비

### 1학년

- 대입 전형, 학과, 계열에 구매 받지 말고 두루 참여하기
- 넓은 차원의 진로 활동에 참여 (진로탐색과정이 보이도록)
- 최소 5등급 이내의 내신관리 필요(전형의 다양성을 위해)
- 교내/외 봉사활동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폭 넓은 독서
- 다양한 활동 속에서 2학년 선택 교과를 고민

\* 선택과목가이드는 각 교육청에서 제공

3월  
친해지는 시간

4월  
고교생애 첫 시험

5월  
학교 행사가 가장 많은 달  
(동아리, 대회, 체험학습 등 참여)  
윗학년 대입전형계획 발표

6월

기말고사 대비!

7~8월  
학생 개인 체험, 진로 고민, 학습보완

9~10월  
선택과목 고민 및 확정  
해당 학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11~12월  
교과별 세특활동(발표 등) 참여  
겨울방학  
선행보다는 복습, 미비점 보완, 학과체험

## 2024 대입 준비의 핵심



### 깊이 있는 교과활동

수업+지필평가+ 수행평가+ 연계 창체활동



- 재학생의 수시모집 전형 적극 활용 필요  
: 성실하고 깊이 있는 교과활동과 학교생활을 통해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준비 함께
- 주력 전형(수시-교과, 종합, (수능최저)/ 정시-수능) 생각하기
- 수능 영향력 고려하여 주말, 방학기간 자기주도적 학습 진행



# 2021학년도 교육활동 안내

## 1 학사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1	월	삼일절	1	목		1	토		1	화		1	목	2차 지필평가
2	화		2	금		2	일		2	수		2	금	2차 지필평가
3	수		3	토		3	월		3	목	고3 대수능모의평가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3	토	
4	목		4	일		4	화		4	금		4	일	
5	금	입학식	5	월		5	수	어린이날	5	토		5	월	창의 사고력 대회 자소서쓰기 활동
6	토		6	화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6	목		6	일	현충일	6	화	
7	일		7	수		7	금		7	월		7	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8	월		8	목		8	토	어버이날	8	화		8	목	
9	화		9	금		9	일		9	수		9	금	청솔제
10	수		10	토		10	월		10	목		10	토	
11	목		11	일		11	화		11	금		11	일	
12	금		12	월		12	수		12	토		12	월	
13	토		13	화		13	목		13	일		13	화	
14	일		14	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4	금		14	월		14	수	
15	월		15	목		15	토		15	화		15	목	
16	화		16	금		16	일		16	수		16	금	
17	수		17	토		17	월		17	목		17	토	제헌절
18	목		18	일		18	화		18	금		18	일	
19	금		19	월		19	수	부처님오신날	19	토		19	월	대학탐방(1차)
20	토		20	화		20	목		20	일		20	화	여름방학식
21	일		21	수		21	금	사제동행한마음 체육축제	21	월		21	수	
22	월		22	목		22	토		22	화		22	목	
23	화		23	금		23	일		23	수		23	금	
24	수	학부모총회	24	토		24	월		24	목		24	토	
25	목	고3전국연합학력평가	25	일		25	화		25	금		25	일	
26	금		26	월	1차 지필평가	26	수		26	토		26	월	
27	토		27	화	1차 지필평가	27	목		27	일		27	화	
28	일		28	수	1차 지필평가	28	금		28	월	2차 지필평가	28	수	
29	월		29	목	1차 지필평가	29	토		29	화	2차 지필평가	29	목	
30	화		30	금		30	일		30	수	2차 지필평가	30	금	
31	수					31	월					31	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일	1	수	고3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	금	1	월	1	수		
2	월	2	목		2	토	2	화	2	목		
3	화	3	금		3	일	3	수	3	금		
4	수	4	토		4	월	4	목	4	토		
5	목	5	일		5	화	5	금	5	일		
6	금	6	월		6	수	6	토	6	월		
7	토	7	화		7	목	7	일	7	화		
8	일	8	수		8	금	8	월	8	수		
9	월	9	목		9	토	9	화	9	목		
10	화	10	금		10	일	10	수	10	금		
11	수	11	토		11	월	11	목	11	토		
12	목	개학식 2학기 개시일	12	일	12	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 2학년 체험학습	12	금	12	일	
13	금	13	월		13	수		13	토	13	월	
14	토	14	화		14	목		14	일	14	화	
15	일	광복절	15	수	15	금		15	월	15	수	
16	월	16	목		16	토		16	화	16	목	
17	화	17	금		17	일		17	수	17	금	
18	수	18	토		18	월		18	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재량휴업일)	18	토
19	목	19	일		19	화		19	금	19	일	
20	금	20	월	추석연휴	20	수	모의면접(3학년)	20	토	20	월	
21	토	21	화	추석	21	목		21	일	21	화	
22	일	22	수	추석연휴	22	금		22	월	3학년 2차 지필평가	22	수
23	월	23	목	재량휴업일	23	토		23	화	3학년 2차 지필평가	23	목
24	화	24	금	재량휴업일	24	일		24	수	3학년 2차 지필평가 고, 2 전국연합학력평가	24	금
25	수	25	토		25	월		25	목	3학년 2차 지필평가	25	토
26	목	26	일		26	화		26	금	3학년 2차 지필평가	26	일
27	금	27	월		27	수		27	토		27	월
28	토	28	화		28	목		28	일		28	화
29	일	29	수		29	금	동아리발표회 밀레니엄 페스티벌	29	월		29	수
30	월	30	목		30	토		30	화		30	목
31	화				31	일					31	금
												졸업식 및 종업식

구 분	시 정		요 일					비 고	
	부터	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담임시간(조회)	08:50	08:55	Neis 지각 적용 시간 : 08시 50분(담임 출결확인)					(등교) 전학년 08:50	
1교시	09:00	09:50						토 요 후 업	50'
2교시	10:00	10:50							50'
3교시	11:00	11:50							50'
4교시	12:00	12:50							50'
점심시간	12:50	13:50							60'
5교시	13:50	14:40							50'
6교시	14:50	15:40			창체활동				50'
7교시	15:50	16:40	자치/적응		청소(10') (15:40~ 15:50)				50'
청소시간 및 종례	16:40	16:50			교직원회의 교직원 연수 전문적학습 공동체활동 16:00~16:50				10'

### 3 교육과정 편제표

가.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 (1,2,3학년 편제)

교과영역	교과(군) (필수이수 단위)	1학년(2021입학생)		2학년(2020입학생)		3학년(2019입학생)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30)	국어 (10)	4	4	4	4	4	4
		국어(4)	국어(4)	문학(4)	독서(4)	화법과 작문(4) 언어와 매체(4) [택1] (4)	화법과 작문(2) 언어와 매체(2) [택1] (2) 심화 국어(2)
	수학 (10)	4	4	6	6	3	3
		수학(4)	수학(4)	수학 I (4) 확률과 통계(2)	수학 II(4) 확률과 통계(2)	경제 수학/ 미적분 [택1] (3)	경제 수학/ 미적분 [택1] (3)
	영어 (10)	4	4	4	4	4	4
영어(4)		영어(4)	영어 I (4)	영어 II(4)	영어독해와 작문 (4)	심화 영어 I (4)	
한국사	3	3					
	한국사(3)	한국사(3)					
기초 교과 선택				3	3	2	2
			고전 읽기/수학 과제 탐구/영미 문학 읽기 [택1](3)	고전 읽기/수학 과제 탐구/영미 문학 읽기 [택1](3)	현대 문학 감상/ 기하/심화 영어 독해 I [택1]2	현대 문학 감상/ 기하/심화 영어 독해 I [택1]2	
탐구 (20)	사회 (10)	3	3	9	9	9	9
		통합사회(3)	통합사회(3)	정치와 법/ 세계사/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물리학 I/화학 I/ 생명 과학 I/ 지구 과학 I [택3] (3)	정치와 법/ 세계사/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물리학 I/화학 I/ 생명 과학 I/ 지구 과학 I [택3] (3)	경제/세계지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물리학 II/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3)	경제/세계지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물리학 II/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3)
과학 (10)	4	4					
	통합과학(3) 과학탐구실험 (1)	통합과학(3) 과학탐구실험 (1)					
체육 · 예술 (20)	체육 (10)	1	1	2	2	2	2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1)	운동과 건강(2)	운동과 건강(2)	스포츠 생활(2)	스포츠 생활(2)
예술 (10)	예술 (10)	3	3			2	2
		음악↔미술(3)	음악↔미술(3)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택1] (2)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택1] (2)
생활 · 교양 (16)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4	4	2	2	2	2
		기술·가정(2) 정보(2)	기술·가정(2) 정보(2)	일본어 I/ 중국어 I [택1](2)	일본어 I/ 중국어 I [택1](2)	한문(2)	한문(2)
교과 영역간 선택과목						2	2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 과학/프로 그래밍/일본어 II/ 중국어 II [택1] (2)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 과학/프로 그래밍/일본어 II/ 중국어 II [택1] (2)
교과 이수단위 소계		30	30	30	30	30	30

나. 2019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자유수강제)-현재 3학년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준 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 합계	필수 이수단위	
				공통	일반	진로	전문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8	8				4	4				18	10		
		문학	5		4					4						
		독서	5		4						4					
		심화 국어	5			2						2				
	수학	수학	8	8				4	4				20	10		
		수학 I	5		4					4						
		수학 II	5		4						4					
		확률과 통계	5		4					2	2					
	영어	영어	8	8				4	4				24	10		
		영어 I	5		4					4						
		영어 II	5		4						4					
		영어독해와 작문	5		4							4				
	한국사	한국사	6	6				3	3				6	6		
		심화 영어 I	5				4					4				
	기초 교과 선택	고전 읽기/수학과제 탐구/영미 문학 읽기	[택1]	5			6			3	3		22	-		
		현대 문학 감상/기하/심화 영어 독해 I	[택1]	5			4				2	2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택1]			5		6					4	2					
미적분/경제수학 [택1]			5		6					3	3					
사회	통합사회	8	6				3	3				6	10			
	통합과학	8	6				3	3								
과학	과학탐구실험	2	2				1	1				8	12			
	탐구 교과 선택															
탐구	정치와 법/세계사/한국지리/생활과 윤리/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택3]	5		6				3	3		36	-			
		[택3]	5		6				3	3						
		[택3]	5		6				3	3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택3]	5		6						3			3		
		[택3]	5		6						3			3		
체육	스포츠 생활	5			2		1	1				10	10			
	운동과 건강	5		4					2	2						
	체육	5		4						2	2					
예술	음악 ↔ 미술	5		3↔3			3	3				10	10			
	미술 감상과 비평/음악 감상과 비평 [택1]	5			4					2	2					
생활 교양	기술·가정	5		4			2	2				16	16			
	정보	5		4			2	2								
	한문 I	5		4						2	2					
	일본어 I /중국어 I [택1]	5		4					2	2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사회문제 탐구/생활과 과학/프로그래밍/일본어 II /중국어 II	[택1]	5			4					2	2	4	-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	-	-	-	-	30	30	30	30	30	30	180	94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	기준시간	운영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필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자율 활동	자율 활동	408	408	26	26	26	26	26	26	156	408
	동아리 활동			17	17	17	17	17	17	102	
	봉사 활동			2	2	2	2	2	2	12	
	진로 활동			23	23	23	23	23	23	138	
	이수시간 합계			68	68	68	68	68	68	408	
학기별 이수단위				4	4	4	4	4	4	24	24

학기당 과목수				11	11	10	10	11	11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 교양성격의 선택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과목의 과목 수				3	3	2	2	4	9		
**학기당 8개 과목수 제한 적용 과목수				8	8	8	8	7	7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4	34	204	204
학년별 총 이수 단위				68		68		68			

다. 2020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자유수강제)- 현재 2학년

교과영역	교과(군)	과목	기준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합계	필수 이수단위	
				공통	일반	진로	전문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8	8				4	4				24	10		
		문학	5		4				4							
		독서	5		4					4						
		심화 국어	5			2						2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택1]	5		6						4	2				
	수학	수학	8	8				4	4				26	10		
		수학 I	5		4				4							
		수학 II	5		4					4						
		확률과 통계	5		4					2	2					
		미적분/경제수학 [택1]	5		6						3	3				
	영어	영어	8	8				4	4				24	10		
		영어 I	5		4				4							
		영어 II	5		4					4						
		영어독해와 작문	5		4							4				
		심화 영어 I	5				4					4				
한국사	한국사	6	6				3	3			6	6				
기초 교과 선택	고전 읽기/수학 과제 탐구/영미 문학 읽기 [택1]	5			6				3	3		10	-			
	현대 문학 감상/기하/심화 영어 독해 I [택1]	5				4					2	2				
탐구	사회	통합사회	8	6				3	3				6	10		
		통합과학	8	6				3	3				8	12		
	과학	과학탐구실험	2	2				1	1							
		정치와 법/세계사/한국지리/생활과 윤리/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택3]	5		6					3	3		36	-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정치와 법/세계사/한국지리/생활과 윤리/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택3]	5		6					3	3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정치와 법/세계사/한국지리/생활과 윤리/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택3]	5		6					3	3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체육·예술	체육	스포츠 생활	5			2		1	1				10	10	
운동과 건강			5		4					2	2					
예술		체육	5		4						2	2				
		음악 ↔ 미술	5		3↔3			3	3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기술·가정	5		4			2	2				16	16		
		정보	5		4			2	2							
		한문 I	5		4						2	2				
		일본어 I /중국어 I [택1]	5		4					2	2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사회문제 탐구/과학과제연구/프로그래밍/일본어 II /중국어 II [택1]	5				4					2	2	4	-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	-	-	-	-	30	30	30	30	30	30	180	94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기준시간	운영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필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408	408	26	26	26	26	26	26	156	408
	동아리 활동			17	17	17	17	17	17	102	
	봉사 활동			2	2	2	2	2	2	12	
	진로 활동			23	23	23	23	23	23	138	
	이수시간 합계			68	68	68	68	68	68	408	
학기별 이수단위				4	4	4	4	4	4	24	24

학기당 과목수	11	11	10	10	11	11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 교양성격의 선택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과목의 과목 수	3	3	2	2	4-9	4-9		
**학기당 8개 과목수 제한 적용 과목수	8	8	8	8	2-7	2-7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4	34	204	204
학년별 총 이수 단위	68		68		68			

라. 2021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자유수강제) - 현재 1학년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준 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 합계	필수 이수단위	
				공통	일반	진로	전문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8	8				4	4					24	10	
		문학	5		4					4						
		독서	5		4						4					
		심화 국어	5			2							2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택1]	5		6							4	2			
	수학	수학	8	8				4	4					26	10	
		수학 I	5		4					4						
		수학 II	5		4						4					
		확률과 통계	5		4					2	2					
		미적분/경제수학 [택1]	5		6						3	3				
	영어	영어	8	8				4	4					24	10	
		영어 I	5		4					4						
		영어 II	5		4						4					
		영어독해와 작문	5		4							4				
심화 영어 I		5				4						4				
한국사	한국사	6	6				3	3				6	6			
기초 교과 선택	고전 읽기/수학 과제 탐구/영미 문학 읽기 [택1]	5			6					3	3		10	-		
	현대 문학 감상/기하/심화 영어 독해 I [택1]	5				4						2	2			
탐구	사회	통합사회	8	6				3	3					6	10	
		통합과학	8	6					3	3					12	
	과학	과학탐구실험	2	2				1	1					8		
		탐구 교과 선택	정치와 법/세계사/한국지리/생활과 윤리/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택3]	5		6					3	3			36	-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경제/세계지리/사회·문화/윤리와사상/동아시아사/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체육·예술	체육	스포츠 생활	5			2		1	1					10	10
운동과 건강			5		4					2	2					
예술		체육	5		4							2	2			
		음악 ↔ 미술	5		3↔3			3	3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기술·가정	5		4			2	2					16	16	
		정보	5		4			2	2							
		한문 I	5		4							2	2			
		일본어 I /중국어 I [택1]	5		4						2	2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사회문제 탐구/과학과제연구/프로그래밍/일본어 II /중국어 II [택1]	5				4						2	2	4	-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	-	-	-	-	30	30	30	30	30	30	180	94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기준시간	운영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필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408	408	26	26	26	26	26	26	156	408
	동아리 활동			17	17	17	17	17	17	102	
	봉사 활동			2	2	2	2	2	2	12	
	진로 활동			23	23	23	23	23	23	138	
	이수시간 합계			68	68	68	68	68	68	408	
학기별 이수단위				4	4	4	4	4	4	24	24

학기당 과목수	11	11	10	10	11	11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4	34	204	204
학년별 총 이수 단위	68		68		68			

## 4 교내 시상 계획

부서명	대회 및 수상명	내용	시기	참가 대상	수상비율	공개방법
교무 기획부	지성협동대상	3년간 종합적으로 우수한 학생 추천	학년 말	3학년	3명 이내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학교사랑 UCC 작품상	학교 홍보 우수 UCC 제작	2학기 중	2, 3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생활 안전 교육부	효행상	경로 효친 사상 투철	학기별 (연 2회)	전 학년	각 학년 재적 인원 수의 20% 이내 (매 시상 시)	
	선행상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에 헌신				
	봉사상	학교 및 지역 사회 봉사 실적				
	자립상	어려운 환경 극복				
	공로상	학교생활 전반에 모범이 된 학생으로 학교 행사 진행이나 학생자치회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학생				
교육 과정 운영부	나눔 실천 봉사대회	학생주도의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 및 운영 보고서	2학기 중	1, 2학년	참가인원의 20% 이내	
수리 과학부	발명아이디어 대회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인재 발굴	1학기 중	2,3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창의과학사고력 대회	과학 분야의 우수한 학생 선발	1학기 중	2,3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창의수학사고력 대회	수학 분야의 우수한 학생 선발	1학기 중	2,3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과학사진 공모전	과학 문화 확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 갖춘 인재 발굴	2학기 중	전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페임랩 경연대회	자연과학, 수학, 최신공학기술, 의학 연구결과 등의 주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소질과 능력 발굴	2학기 중	2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부서명	대회 및 수상명	내용	시기	참가 대상	수상비율	공개방법
인문 사회부	청술 문학상	운문 및 산문 분야 우수자 발굴	1학기 중	전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독도 엽서 제작전	독도 주권의 중요성 인식으로 역사의식 및 평화실천 태도 배양	1학기 중	전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통일 문예 한마당	시, 소설, 편지쓰기, 그림그리기를 통한 한민족 통일에 대한 의식 고취	1학기 중	전학년	참가인원의 20%이내	
예술 체육 교육부	체력왕 최강전	왕복오래달리기 및 줄넘기 종목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1학기 중	2학년	종목별 남녀별 참가인원의 20%이내	
	체육인재상	체육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학생	학년말	2,3학년	각 학년 정원의 5% 이내	
	PAPS우수상	PAPS 평가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1학기말	2,3학년	각 학년 정원의 5% 이내	
	공로상	-체육분야 : 재학 중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예술분야 :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학년말	3학년	해당학생	
학년부	교과우수상	과목별 수강 학생 상위 4%	학기별 (연2회)	전학년	과목별 수강 학생 상위 4%	
	3년개근상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개근인 학생	학년말	3학년	해당학생	
	3년정근상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회 이내인 학생	학년말	3학년	해당학생	

## 5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 가. 추진전략



### 나. 운영목표

- 1) 자유수강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클러스터, 주문형강좌 등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선택과목의 확대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
- 2) 최소성취기준 미도달 학생 사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 3)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상담 활동 활성화 및 학생 맞춤형의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
- 4)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교문화 형성

### 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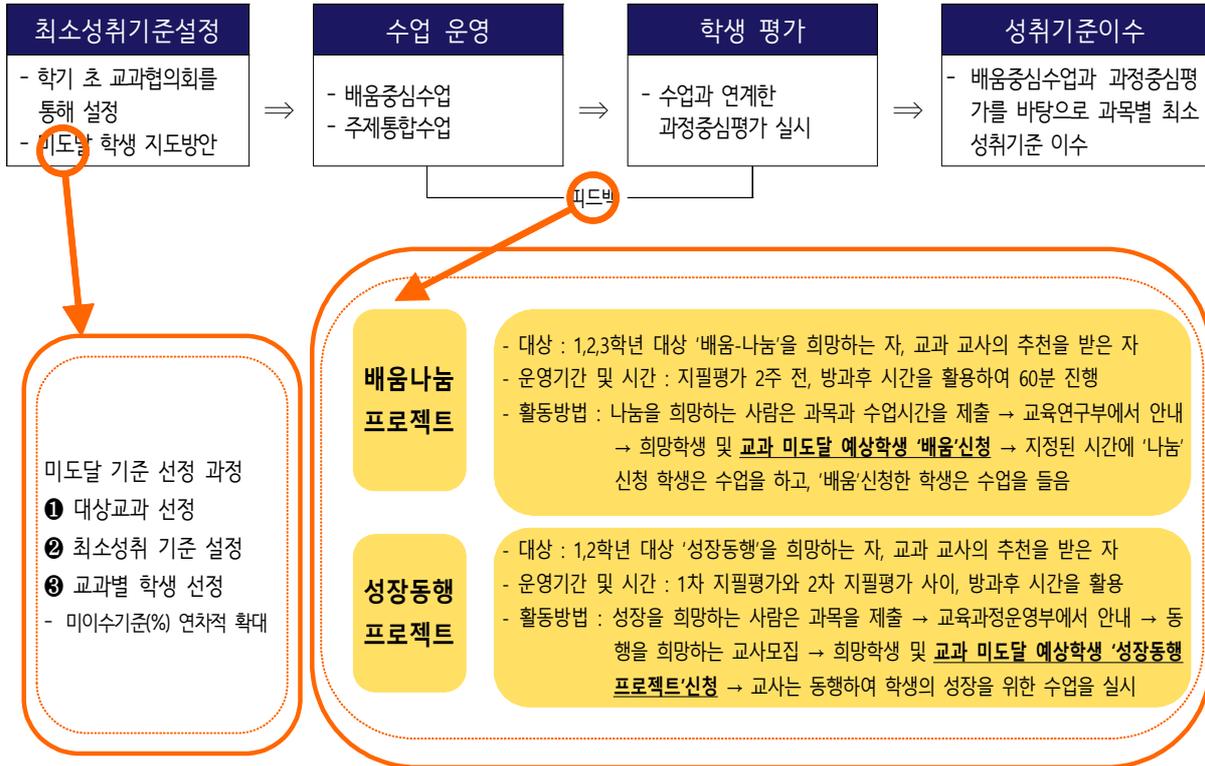
- 1) 2, 3학년 학교 지정 과목 및 개설 과목(2021학년도 입학생 기준 편제 참고)
- 2)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
  - 가) 학년 초 학생,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통한 개설과목 선정 및 교육과정편제표 반영
  - 나) 탐구교과 외에 기초교과 및 교과영역 간 선택으로 학생의 실질적 선택 보장
  - 다) 소인수과목 수강 희망학생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및 주문형 강좌 확대

### 라. 학생 진로설계 역량 강화

- 1) 1학년 진로 적성 검사, 2학년 전공 탐색 검사 후 관련 진로진학 상담 지원
- 2) 진로상담 및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진로 교육 실시

## 마.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책임지도

### 1)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피드백 실시



### 2)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가) 1학년 기초학력 진단-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과후학교 대상자 선정

나) 우수학생과 맞춤형 개별학습 희망자가 함께하는 학생 튜터링제도 운영



## 6 교육과정 클러스터

### 가. 교육과정 클러스터란?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지역 학교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입니다.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본교와 인근 타학교(영덕고, 태장고)로 이동하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진로와 연계된 교과 또는 전문심화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나. 필요성 및 목적

- 1) 학교 간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 2) 교육과정 특성화 및 다양화를 통한 풍부한 학습경험 제공
- 3)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 다. 운영방침

- 1)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하여 본교와 인근에 있는 영덕고, 태장고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 2) 학생의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클러스터 교과가 개설된 인근 학교에 상호 이동하여 수강
- 3) 운영 대상은 2학년이며 2020학년도 입학생은 2021학년도에 대상 학년이 되므로 2020년 2학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계획(개설과목 등) 수립 및 지원자 모집 예정  
 ※ 지원자 수가 수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면접을 통하여 수강 희망사유와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 예정
- 4)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협동 학습, 토의·토론 수업 등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경험 제공하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 5) 방과 후 수업이 아닌 정규교육과정이므로 출결 체크, 평가(지필, 수행, 교과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가 이루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

### 라. 세부 운영계획

- 1) 운영 기간 : 2021. 3. 10. ~ 2021. 12. 29.
- 2) 운영 대상 : 청명고, 영덕고, 태장고 2학년 학생 중 희망자
- 3) 운영 시간 : 수요일 18:00~20:00
- 4) 개설 교과

학교명	개설교과	인원			비고
		본교	태장	영덕	
청명고등학교	시스템프로그래밍	9	2	9	2022학년도 2학년 대상 교과는 변경될 수 있음.
태장고등학교	과학과제 연구	•	8	14	
영덕고등학교	화학실험	9	•	11	

### 가. 주문형 강좌란?

주변 학교들과의 네트워크 없이 교내에서 단독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가 있으나 교사 수급 문제 또는 반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개설이 어려웠던 과목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강좌

### 나. 필요성 및 목적

- 1) 학생, 학부모의 진로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맞춤형지도
- 2) 학교 내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강화
- 3) 학생중심형 진로 맞춤 교육과정을 구축
- 4) 일반고등학교 내에서의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및 다양화 유도
- 5)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

### 다. 운영방침

- 1)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정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배움
- 2) 교과목 이수 외에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 3)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한 뒤 학교 실정에 맞게 주문형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의 진로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 4) 방과 후 수업이 아닌 정규교육과정인므로 출결 체크, 평가(지필, 수행, 교과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가 이루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

### 라. 주문형 강좌 교과목 운영 단위,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 계획

- 1) 운영 기간 : 2021. 3. 9. ~ 2021. 12. 31. (학기별로 운영)
- 2) 운영 대상 : 2학년 학생 중 희망자
- 3) 운영 시간 : 화요일, 수요일 18:00~20:00 / 2학기는 변경될 수 있음.
- 4) 운영 과목 : 1학기 물리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심리학  
2학기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과목을 개설하여 각 2단위로 진행할 예정

## 가. 1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일정 - 코로나19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날짜	요일	활동(학년)	주관부서
3월 5일	금	입학식(1) / 개학식(2,3)	교무기획부
	금	학급자치	학년부
3월 7일	월	감염병예방교육	예술체육부
3월 10일	수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인권교육	생활안전교육부
3월 15일	월	인터넷중독예방교육	교육정보부
3월 17일	수	봉사활동 소양교육	교육과정운영부
3월 22일	월	학급자치	학년부
3월 24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3월 29일	월	아동학대예방교육	생활안전교육부
3월 31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4월 5일	월	생활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부
4월 7일	수	표준화검사(1,2) 진로활동(3)	진로진학상담부, 교육과정부
4월 12일	월	재난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부
4월 14일	수	소그룹활동(1,2)	교육과정운영부
4월 19일	월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특수교육부
4월 21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5월 3일	월	과학의날행사	수리과학부
5월 10일	월	다문화수용성교육	인문사회부
5월 12일	수	소그룹활동(1,2) 학년특색활동(3)	교육과정운영부 3학년부
5월 17일	월	생명존중교육	생활안전교육부
5월 21일	금	체육대회(1,2) 1교시~5교시 야외촬영(3) 1교시~5교시 봉사활동(1,2,3) 6,7교시	예술체육부 3학년부 교육과정운영부
5월 24일	월	가정폭력예방교육	생활안전교육부
5월 26일	월	직업전문인특강(1,2) 진로활동(3)	진로진학상담부
5월 31일	월	독도교육	인문사회부
6월 2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6월 7일	월	성매매예방교육	예술체육부
6월 9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6월 14일	월	성폭력예방교육	예술체육부
6월 16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6월 21일	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생활안전부
6월 23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7월 5일	월	자기소개서쓰기활동	진로진학상담부
7월 7일	수	소그룹활동(1,2)	교육과정운영부
7월 9일	금	청솔제(1,2) 1교시~7교시	생활안전부, 1,2학년부
7월 12일	월	학급자치(정부회장선거방송)	생활안전부, 1,2학년부
7월 14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7월 19일	월	저작권교육	교육정보부
7월 20일	화	방학식	교무기획부

나. 2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일정 - 코로나19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날짜	요일	활동(학년)	주관부서
8월 12일	목	개학식	교무기획부
8월 16일	월	감염병예방교육	예술체육부
8월 18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8월 23일	월	학급자치	학년부
8월 25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8월 30일	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생활안전부
9월 1일	수	소그룹활동(1,2) (3학년 대수능모의평가)	교육과정운영부
9월 6일	월	장애인식개선교육	특수교육부
9월 8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9월 13일	월	성폭력예방교육	예술체육부
9월 15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9월 27일	월	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	교육정보부
9월 29일	수	성매매예방교육	예술체육부
		합동소방훈련	생활안전부
10월 11일	월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부
10월 12일	화	현장체험학습(1,2) 1교시~7교시 (3학년 전국연합평가)	1,2학년부
10월 13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10월 18일	월	재난안전교육	생활안전부
10월 20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10월 25일	월	생명존중교육	생활안전부
10월 27일	수	동아리	교육과정운영부
10월 29일	금	동아리 1교시~3교시(3시간)	교육과정운영부
		밀레니엄페스티벌(1,2) 4교시~7교시(4시간) 진로상담(3) 4교시~7교시(4시간)	인문사회부, 학년부
11월 1일	월	동아리(1시간)	교육과정운영부
11월 3일	수	소그룹활동(1,2) 학년특색(3)	교육과정운영부 3학년부
11월 8일	월	가정폭력예방교육	생활안전부
11월 10일	수	봉사활동	교육과정운영부
11월 15일	월	아동학대예방교육	생활안전부
11월 22일	월	직업안전교육(1,2)	생활안전부
11월 29일	월	학급자치	학년부
		직업안전교육(3)	생활안전부
12월 1일	수	응급처치교육	예술체육부
		심폐소생교육	예술체육부
12월 13일	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생활안전부
12월 15일	수	소그룹활동(1,2) 학년특색(3)	교육과정운영부 3학년부
12월 20일	월	자기소개서 쓰기활동(1,2) 학급자치(3)	진로진학상담부 3학년부
12월 22일	수	선배와의 만남(1,2) 학년특색(3)	진로진학상담부
12월 27일	월	봉사활동	교육과정부
12월 29일	수	학급자치(1,2) 학년특색(3)	학년부
12월 31일	금	종업식(1,2) / 졸업식(3)	교무기획부

### 가. 목적

- 1) 기초학습부진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
- 2) 기초학력 향상을 통한 학생 자존감 향상 및 정규수업 적극적 참여

### 나. 방침

- 1)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 희망에 의한다.
- 2)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정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 3) 또래 학습 및 소규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

### 다. 세부추진계획

- 1) 기초학력 향상 방과후 학교 운영
  - 가) 대상 : 1학년 학생 중 1학기 성적 영, 수 기초학력 부진학생 중 희망자
  - 나) 운영과목 : 영어, 수학
  - 다) 운영기간 : 2021. 9월 ~ 11월 (과목별 1개월)
  - 라) 지도교사 : 본교 교사 중 희망교사

#### 2) 학생튜터링제도

구분	개별학습 지도학생(Tutor)	개별학습 희망학생(Tutee)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최근 학기 국/영/수/사탐/과탐의 해당교과 내신등급이 2등급 이내이고, (1학년의 경우 입학성적 185점 이상)</li> <li>▶ 재학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li> <li>▶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부진 요인을 알 수 없고,</li> <li>▶ 맞춤형 개별학습을 통해 학력향상을 희망하는 자</li> <li>▶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li> </ul>
튜터 과목 및 인원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제2외국어 등 희망과목 지원	2과목 이상 신청 시 요일을 달리하여 튜터와 연계 가능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자율학습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li> <li>- 과목당 1주일에 두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li> <li>※ 개별학습 지도학생(Tutor)학생 대우 및 보상: 학교봉사활동 시간 부여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영역 등재)</li> <li>개별학습 희망학생(Tutee)학생 대우 및 보상: 학생생활기록부 입력</li> </ul>	

#### 3) '배움-나눔'프로젝트

구분	개별학습 지도학생(멘토)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3학년 대상으로 '배움-나눔(멘토링)'을 희망하는 자</li> <li>▶ 재학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li> <li>▶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li> </ul>
과목 및 인원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중 희망과목 지원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기간 : 지필교사 2주 전</li> <li>○ 활동 시간 :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서 멘토-멘티별 희망에 따라 60분 동안 진행</li> <li>○ 멘토링 할 과목, 단원, 수준 등을 정하여 멘토링 후 멘티 반응 및 소감 등을 포함한 멘토링 보고서 작성</li> <li>※ 멘토: 학교봉사활동 시간 부여 (생활기록부 봉사활동영역등재-최대 5시간 인정)</li> <li>멘티: 멘티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활동(4회 이상)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음.</li> </ul>

### 라. 기대효과

- 1)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자존감 향상을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 실현
- 2) 또래 수업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 가. 목적

- 1) 사제동행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공감대 형성
- 2) 토론과 발표 활동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능력과 대중들 앞에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는 능력 증진

### 나. 세부 추진 계획

- 1) 희망 학생 모집 : 북 콘서트 진행 최소 15일 전까지 마감
- 2) 발표팀 모집 : 각 2개(참가 열의에 따라 조정 가능) 팀 및 지도 교사 선정
- 3) 장 소 : 도서관
- 4) 대 상 : 1, 2, 3학년 학생 중 희망자 8팀( 3학년은 1학기에 실시), 총 40명

### 다. 운영 일정

1차 북 콘서트	2021. 4. 7.(수). 16:00, 2개 모둠
2차 북 콘서트	2021. 6. 9.(수). 16:00, 2개 모둠
3차 북 콘서트	2021. 9. 15.(수) 16:00, 2개 모둠
4차 북 콘서트	2021. 11. 10.(수) 16:00, 2개 모둠

### 라. 운영 방침

- 1) 학생 5명을 1팀으로 구성한다.
  - 2) 교사 1명이 학생 1팀을 연계하여 지도한다.
  - 3) 학생들은 교사(&사서)와 협의하여 도서를 선정하고 정독 후 요약, 정리한다.
  - 4) 교사의 지도하에 북 콘서트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3회에 걸쳐 독서토론 활동을 한다.
  - 5) 토론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명고 북 콘서트’를 실시한다.
  - 6) 북 콘서트에 참가하는 일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팀에게 자신의 소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 7) 성실하게 청명 북 콘서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콘서트 진행팀 학생 전원과 청중으로 참가하여 질의를 한 학생에 한해 활동 내용을 생기부(발표자는 지도교사, 청중은 사서)에 기록한다.
  - 8) 행사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 제작 및 행사 후 결과물을 공유(수업, 토론회)한다.
- \* 참가 열의와 희망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콘서트 횟수와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 1 출결 규정 안내

## 2020학년도 청명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제7장 출결상황 관리

## 제26조【수업 일수】

- ① 수업일수는 1, 2학년 173일, 3학년 177일로 한다.
- ②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③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예 : 2학년 4.15. 자퇴 후,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편입학)일 경우 이전 학년도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 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

## 제27조【결석】

- ①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 : 2학년 4.15, 자퇴 후,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편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 제28조【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하며, 상벌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예 :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1항 제8호)에 의한 소년원의 교육기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참가, 훈련참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등'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단, 학생 선수의 경우 학교장 허가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수업일수 192일의 1/3범위 이내인 64일 허용 가능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



별교육이수 기간

-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지필평가 기간 제외)
- ⑥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복무 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64호, 2018.12.18.)를 근거로 함)

구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학교장은 위 이외의 부모 및 조부모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⑦ 공상으로 인한 결석
-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⑩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1일(단,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 ⑪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이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 계획 기간 내에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 ⑫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 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질병으로 인한 결석】**

- ①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소속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제30조【기타 결석】

-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및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담임교사 의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1조【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기간
-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 ⑤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32조【지각, 조퇴 및 결과】

-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8시 5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인 종례 전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결과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 수업 시간 중 10분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④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 조퇴가 발생된 경우에는 질병보다 ‘미인정이 우선하며, 같은 사유일 경우 지각 1회로 처리한다.
- 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⑥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청명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2.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해당 학년도 기준)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3.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 한 체험 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 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4.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5.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 보한 후 체험 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 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7.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 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 로 대신함) 또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8.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기타 체험 활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9.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 ① 학기 시작 후 일주일, ② 시험기간(지필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수능모의고사 등)
  -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 ④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예 체능 포함),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어학 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10.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을 3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신청서 결재	학교	담임-학년부장-교감-교장(4단 결재)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lt;서식 2&gt;제출</li> <li>■ 종료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li> <li>■ 보고서 제출 쪽수는 2쪽 이상(증빙자료 포함)이며, 결재는 학년부장 전결</li> </ul>	홈페이지 공지 사항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5년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 학년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 발생 소지 최소화

위 규칙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시행방안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공휴일 포함하여 1개월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학습에 한한다.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양한다.

□ 절차 및 서식

종 류	내 용(예시)	절 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여행</li> <li>○ 친·인척 방문</li> <li>○ 견학 활동</li> <li>○ 각종 체험 활동</li> <li>○ 기타 학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 되는 학교 밖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lt;서식 1&gt; / 가정학습 신청서 &lt;서식 3&gt; (보호자 신청 제출)</li> <li>○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li> <li>○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li> <li>○ 교외체험학습 실시</li> <li>○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lt;서식 2&gt; / 가정학습 보고서 &lt;서식 4&gt; 제출</li> <li>○ 출석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li> </ul>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신청&lt;서식 5&gt;</li> <li>○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업무관리시스템)</li> <li>○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송부&lt;서식 6&gt;송부</li> <li>○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li> <li>○ 교환학습 실시</li> <li>○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원적 학교에 통보 &lt;서식 7&gt;</li> </ul>

<서식 1>

**청명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	학년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본교의 출석인정 기간 연간 (20)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b>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불허기간 확인</b> ※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
	※ 학교의 체험학습 연간 인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체험학습 통보서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의 경우에 대하여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학교장'의 최종 사후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학습형태	◦ 가족여행( ) ◦ 친·인척 방문( ) ◦ 견학 활동( ) ◦ 체험 활동( ) ◦ 기타( )				
목적지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인솔자명 <sup>1)</sup>		관계		연락처	
목적(사유)					
체험 학습 계획					
위와 같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청명고등학교장 귀하					

-----<절 취 선(이하 담임 작성)>-----

**청명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학교의 출석인정 기간 연간 (20)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허가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 )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청명고등학교 ( )학년 ( )반 담임 : (인) 보호자님 귀하				

사유<sup>2)</sup> :

- 1)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또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 2) 사유란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유 등을 입력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서식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번호	휴대폰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40)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 기간 확인 ※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
학습형태	가정학습					
장 소	자택 (경기도 00시 ~~)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목적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계획	교시	교과	※ 학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					
	2					
	3					
	4					
	5					
	6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청명고등학교장 귀하						

-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  
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 신청서 제출 기한은 ( )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 )일 이내
-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근거: 속주주의)
-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서식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과 보고서**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가정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장소							
학습형태	가정학습						
제 목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과	교시	교과	※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학습결과물, 작품 등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1						
	2						
	3						
	4						
	5						
	6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청명고등학교장 귀하							

※ 학습결과보고서는 ~ 시기에 ~~~ 방법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서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    )일 이내

< 서식5 >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신청서

		담임	학년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신청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 허가 기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 위탁 희망 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 후 실시 ※ 국내에 한함				
위탁희망학교	시도명( ) ( )학교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교환학습 목적 또는 사유					
학습계획 및 생활계획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청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

수 신 :            학교장

참 조 : 담당부장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소속 학교	학교 전화번호	학년 반	담임명
교환학습 목적 또는 사유				
학생 관련 참고 사항				
위탁 교육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    )일간			
담당 지도 교사				

위 학생의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을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명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7>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

수 신 :            학교장

참 조 : 담당부장

<b>학생 인적사항</b>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위탁학교	위탁학교 전화번호	위탁학교 학년 반	위탁학교 담임명

◎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 학생의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청명고등학교장 (직인)

**2021학년도 청명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5 장 결시자 등의 성적처리**

**제15조【결시생의 성적처리】**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로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은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결시 학생의 인정점은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지필평가 성적을,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 시행하는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적용하여 부여한다. 단, 산출된 성적은 만점을 넘을 수 없으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결시생 인정점은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참고(p.69).

**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교육기관(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공문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결시
- 경조사로 인한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 상급학교 진학 시험, 특성화고등학교(일반학교의 특성화학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 학생의 입사 시험의 경우 해당 소요일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인정한 결시 성적 산출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다.

**1. 지필 평가 :**

나이스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기준점수 : 평균 점수 비율(전입생제외))

가. 1차, 2차 지필평가 중 1회 결시한 경우 :

$$\text{결시생 인정점} = \text{결시생의 응시고사 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응시생)}}{\text{응시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응시생)}} \times 100\%$$

나. 1차, 2차 지필평가 모두 결시한 경우 및 학기당 1회 실시하는 과목에서 결시한 경우 :

$$\text{결시생 인정점} = \frac{\text{해당과목 지필평가의 평균 점수}}{\text{평균 점수}} \times \frac{\text{당해자 해당과목 수행평가 전체 영역 득점 총점}}{\text{해당과목 수행평가 전체 영역 배점 총점}} \times 100\%$$

단, 해당과목 지필평가의 평균점수는 1차, 2차 각각 지필평가의 평균점수로 산출함.



## 2. 수행평가 :

### \* 수행평가의 일부 영역의 점수가 있는 경우

$$\frac{\text{수행평가 해당영역의 기본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기본점수 제외)}}{\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frac{\text{당해자 수행평가 참여 영역 득점 총점}}{\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100\%$$

### \* 수행평가의 영역에 점수가 없는 경우

$$\frac{\text{수행평가 해당영역의 기본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기본점수 제외)}}{\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frac{\text{당해자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 배점 총점}} \times 100\%$$

### \* 수행평가 100%의 경우에 점수가 없는 경우

$$\text{영역별 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times \frac{\text{당해자의 논술형 평가 영역 득점}}{\text{논술형 평가 영역 총점}} \times 100\%$$

단, 장기인정결석으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미응시한 경우, 수행평가는 영역별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 ②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 질병으로 인한 결시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증빙자료(학급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 첨부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르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의 결시

###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

(예 : 간병,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 학급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첨부)

### - 성적 산출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 1. 지필 평가 :

나이스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관리(기준점수 : 평균점수비율(전입생제외))

### 가. 1차, 2차 지필평가 중 1회 결시한 경우 :

$$\text{결시생 인정점} = \text{결시생의 응시고사 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응시생)}}{\text{응시고사 해당과목 평균(순수응시생)}} \times 80\%$$

### 나. 1차, 2차 지필평가 모두 결시한 경우 및 학기당 1회 실시하는 과목에서 결시한 경우 :

$$\text{결시생 인정점} = \frac{\text{해당과목 지필평가의 평균 점수}}{\text{해당과목 수행평가 전체 영역 배점 총점}} \times \frac{\text{당해자 해당과목 수행평가 전체 영역 득점 총점}}{\text{해당과목 수행평가 전체 영역 배점 총점}} \times 80\%$$

단, 해당과목 지필평가의 평균점수는 1차, 2차 각각 지필평가의 평균점수로 산출함.

## 2. 수행평가 :

### \* 수행평가의 일부 영역의 점수가 있는 경우

$$\text{수행평가 해당영역의 기본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기본점수 제외)} \times \frac{\text{당해자 수행평가 참여 영역 득점 총점}}{\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80\%$$

### \* 수행평가의 영역에 점수가 없는 경우

$$\text{수행평가 해당영역의 기본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기본점수 제외)} \times \frac{\text{당해자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 배점 총점}} \times 80\%$$

### \* 수행평가 100%의 경우에 점수가 없는 경우

$$\text{영역별 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times \frac{\text{당해자의 논술형 평가 영역 득점}}{\text{논술형 평가 영역 총점}} \times 80\%$$

### ③ 당해 지필평가의 해당 과목 최하점에서 1점을 감한 점수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 결시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로 인한 결시

수행평가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미제출인 경우는 해당 학년 해당 교과목의 수행평가의 기본 점수에서 1점을 감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④ 기타결시 및 출석인정 결시 중 생리결시인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결시인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단 증빙자료(생리결시인 경우 보건교사확인서 또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 ⑤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한 학생이 ①, ②, ③항의 경우가 복합하여 발생할 경우는 각 항의 적용 원칙에 따른다.
- ⑥ 실험·실습·실기평가에 결시한 학생은 추가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의 실험·실습·실기평가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거나, ①항 ~ ④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 ⑦ 삭제 <2016.3.1.>
- ⑧ 인정점을 부여할 근거가 없는 경우는 사안별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 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인정 비율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에 의한 보호관찰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결시인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3.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참고 자료>

###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 [결시 유형에 따른 인정점 반영 비율]

- ①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학생과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등은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출석인정결석'이므로 100% 인정점 반영
  -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하므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② 고위험군 학생(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이 감염을 우려하여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면 100% 인정점 반영, '질병결석\*\*\*\*'에 해당하면 80% 인정점 반영
  -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③ 기타 미등교 학생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점 반영 비율을 결정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학생 선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거】** 이 규정은 학칙 제 35조, 제 36조, 제 37조에 준거한다.

#### 제3조【선도원칙】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4조【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선도 심의 및 생활 지도를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이 원하거나 사안에 따라 학생대표(2인)를 참석시킬 수 있다(학생대표는 학생회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칙 위반 사안 발생 시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사안이 경미하여 교칙의 학교내 봉사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생활안전교육부 교사 전원 및 해당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4. 학생 표창 시 선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①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 : 학생선도사항 심의(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안전교육부 생활지도 전담교사 등)
  - ④ 삭제
  - ⑤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6.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 제5조【기능】 삭제

### 제6조【사안 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직접 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7조【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사무처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간사가 작성,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 제 3 장 선 도

**제9조【징계 종류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학교 내 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내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특별교육이수」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6. 「퇴학처분」은 학생의 등교 정지와 동시에 퇴학한다.  
단,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 7일 이내에 전학이나 취업을 알아보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수업결손(정규수업)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학년 부장, 학년생활지도계,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선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및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3. 「사회봉사」는 다음 사항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다.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교육법 시행령 77조 5항 규정의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 중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금연학교, 청소년 상담소 등)

- 다.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치료 등)
  - 라.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 마.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 바.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에 출석정지하게 하며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퇴학 처분」은 학생과 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 가. 산업체특별학교,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전학
  - 나. 직업 알선
  -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가, 나, 항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퇴학처분을 명할 때는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선도 대장에 ○○기관으로 전학·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7. 제 9조에 해당한 선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8. 제 2항과 제 3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 대상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1조【징계 기준】** 징계의 기준은 제 18조【징계대상】을 기준으로 하되, 상위대상은 하위대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표-1> 학생선도기준 참조

**제12조【징계 심의 확정】**

- 1.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2.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내용 통보】**

-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경감 및 가중】**

- 1.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선도 명령 이전에 교육계 내부상(교육부 장관, 교육감 표창), 외부상(시규모 이상 각종상), 특기상, 선행상, 봉사상을 수상한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 명령내용을 경감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해제】** 선도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은 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다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7조【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선도 기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18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① 학교 내 봉사

1. 삭제
2.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당해 관청으로부터 처벌된 자
  - 나. 상습적으로 학교(교사)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 다. 교사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 라. 학교에서 금지한 유흥장에 출입한자 또는 유흥장 취업자
  - 마. 비품, 시설, 기타 공공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자
  - 바. 교내에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한 자
  - 사. 학교 면학분위기를 습관적으로 훼손하는 자
  - 아.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 자.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0일 ~ 15일인 자
  - 차.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 카. 습관적으로 이성간의 교제를 통하여 면학기풍을 흐리게 한 자
  - 타. 교내외에서 흡연을 한 자

② 사회봉사

1. 누적된 행위
  - 가. 학교 내 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자
  - 나. 기타 학생 선도 기준의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자는 처벌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가.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나. 문신을 한자
  - 다. 삭제
  - 라. 음주, 흡연으로 해당 학년의 지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마. 미인정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6일 ~ 20일인 자
  - 바.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③ 특별교육이수

1. 누적된 행위
  - 가. 사회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된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선도 위임된 자
  - 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장물을 취득 또는 처분한 자
  - 다. 교풍을 문란케 하여 현저히 학교 명예를 손상케 한 자

- 라. 단체행동, 수업거부 및 교사 기피 등의 선동을 한 자
- 마. 교사에 대하여 불손한 언행과 지시를 불응한 자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
- 바. 음주 또는 상습 흡연으로 사회봉사 선도를 받았으나 개선의 정이 없는 자
- 사. 미인정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21일 이상인 자
- 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누적된 행위

- 가.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미인정출결로 특별교육 이수를 받고도 다시 미인정출결이 10일 이상인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자
- 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⑤ 퇴학처분

1. 누적된 행위

- 가. 출석정지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다시 사회봉사 이상의 행위(미인정출결 21일 이상)를 감행한 자나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불온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
- 나. 불온 전단 및 서적을 살포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살포한 자
- 다. 습관적인 본드, 부탄가스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흡입자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 결의된 자
- 마. 무단가출,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9조【징계학생 관리】** 선도의 종류에 의거 대상 학생을 선도한다.

1. 학교 내 봉사

학교 내 봉사는 선도학생의 습관화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행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에 등교시켜 봉사의 실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5일 이내, 1일 2시간 이내로 해당 학년부에서 관리하며 이 기간은 출석 처리한다.

2.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생활 태도상 학교 내 봉사로서 행동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게 좀 더 행동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담임교사가 관리하면서 이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에서 조·종례 실시 후 귀가 조치)

3. 특별교육이수

가. 특별교육이수는 생활 태도상 사회봉사로서 행동의 개선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행동의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할 학생으로 가정에서의 철저한 반성과 유관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서 그 행동의 개선 정도에 따라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실시하며 담임교사가 선도 관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나.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징계로 지도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가. 출석정지는 학생선도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출석정지의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단,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 퇴학처분은 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학교, 단체 생활로부터의 격리 조치이며,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또는 타교로 환경을 전환시키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 준다. 이 경우는 퇴학처분 내용을 징계대장에 기재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제20조【상담 및 지도】** 선도대상 학생은 결연 교사 및 진로상담부와 협의하여 상담지도, 선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결연된 학생은 상담 자원 교사 또는 학생이 상담하고 싶은 교사와 결연해 지도를 받게 한다.

- ① 삭제
- ② 삭제

### **제21조【학부모 지도】**

- ① 선도 처리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②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 후 해당 교사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한다.

### **제22조【학급담임지도】**

- ① 선도 기간 중의 학생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 해당학년부장 및 생활안전교육부장의 확인을 받는다.
- ② 요선도 학생의 학급담임은 선도 기간 중에 가정방문 및 기타 방법으로 항상 선도하여야 한다.

### **제23조【징계의 유보】**

학생 선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을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 **제24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제25조【재입학 및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 **제26조【이의제기】**

- ① 선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 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이는 1회로 제한한다.

**제27조【재심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표-1> 학생 선도 기준**

구분	항목	사 안 내 용	징계사항				
			교내 봉사 (5일 이내)	사회 봉사 (5일 이내)	특별 교육 이수 (5일 이내)	출석 정지 (10일 이내)	퇴학 처분
기본 생활 습관 · 준 법 · 공 공 기 물 관 리	<b>▶기본생활습관</b>						
	1	용의 및 복장이 바르지 못해 지도를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2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다 지도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b>▶준 법</b>						
	3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4	언행이 불량하여 학교 내 교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5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가한 학생			○	○	○
	6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훼손을 주동한 학생 및 가담 학생		○	○	○	○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8	공공기물을 파괴하거나 손괴한 학생	○	○	○	○	
	9	공문서(제증명, 식권, 납부금고지서포함)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학생	○	○	○	○	○
	1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한 학생	○	○	○	○	
	11	학교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12	학교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절취한 학생		○	○	○	○
	13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	○	○	○
	14	학교 내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15	사회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
	16	특별교육이수에 불응한 학생				○	○
	17	경찰에 연행 되었으나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	○	○		
	18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	○	○
	19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학생				○	○
	20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행위를 한 학생		○	○	○	○
	21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	○	○	○	○
	<b>▶ 교내 정·부회장 선거에서 다음 내용을 위반한 학생</b>						
	22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의 개별 선거 집회를 연 학생	○	○	○	○	
	23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배부하거나 개별 벽보 부착한 학생	○	○	○	○	
24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학생	○	○	○	○		
25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투표 및 개표시에 부정을 한 학생	○	○	○	○		
26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생	○	○				

구분	항목	사 안 내 용	징계사항				
			교내 봉사 (5일 이내)	사회 봉사 (5일 이내)	특별 교육 이수 (5일이 내)	출석 지정 (10일 이내)	퇴학 처분
집단 행위	▶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27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28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9	학생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	○	○		
	30	불법 동아리 조직하거나 가입한 행위 또는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 한 학생		○	○	○	○
	31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수업 및 시험	▶ 수업 학습 방해, 정기고사 부정행위(해당과목을 0점 처리 원칙)						
	32	수업 진행 또는 타인의 학습을 심히 방해한 학생	○	○	○	○	○
	33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학생		○	○	○	○
	34	정기고사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35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36	시험문제를 탐지, 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학생			○	○	○
음주 약물	▶ 흡연, 음주, 약물						
	37	교내외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이나 담배,ライター 등을 소지한 학생	○	○	○	○	○
	38	마약류를 소지, 복용, 전달, 판매 등 어느 한부분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	○	○
39	교내외에서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한 학생	○	○	○	○	○	
퇴 폐 행위 · 정 보 윤 리	▶ 퇴폐 행위						
	40	교·내외에서 도박 행위를 한 학생	○	○	○		
	41	불량 서적·저장매체를 소지하거나 본 학생	○	○	○		
	42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43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	○	○	○
	44	원동기를 탑승하고 등하교하는 학생	○	○			
	45	교외생활지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46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학생	○	○	○	○	○
	47	학생으로서 출입할 수 없는 퇴폐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 정보통신 윤리						
	48	정보통신매체 사용 시 정보통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49	타인 아이디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행위	○	○	○	○	○	
50	문자, 이메일을 통해 타인을 음해한 행위		○	○	○	○	
51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욕설, 비난의 글로 타인을 비방한 행위	○	○	○	○	○	
근태	52	무단 근태를 상습적으로 한 자	○	○	○	○	○
기 타	53	본 징계기준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서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	○	○	○

## 1 학교, 성, 가정 폭력예방 및 대처

## 가. 학교폭력, 부모님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 2) 학교폭력의 유형

- 가)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차기, 찌르기, 옷·물건 망가뜨리기 등
- 나) 언어적 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위협하기(말, 쪽지, 이메일), 소문 퍼뜨리기 등
- 다) 관계적 폭력(따돌림) : 외톨이 만들기, 무시하기, 짜러보기, 비웃기 등
- 라)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모든 행위, 특정인에 대해 비방·협박하는 문자와 영상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올리거나 보내는 행위 등
- 마) 금품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 바) 강요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
- 사)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 3)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징후

- 가)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
- 나)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다)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 라)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 마)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 바)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 사) 싸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 아)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자)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한다.
- 차)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 카)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 4) 부모님의 대처 방법

- 가)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 나)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다)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라)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마)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바) 위급할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5)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 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17, #117(문자), www.safe182.go.kr
- 나) 학부모 ON누리 www.parents.go.kr
- 다) 학교전담경찰관(학교 홈페이지에 연락처 있음)
- 라) 학교전화: 031-201-9740, 9741 (생활안전교육부)

**나. 따돌림, 서로 배려하는 생활 태도로 예방할 수 있어요.**

1) 따돌림에 노출된 자녀의 징후

- 가) 늦잠을 자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 나)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 다) 머리카락 등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한다.
- 라) 도시락을 먹지 않았거나 혼자 먹었다고 이야기한다.
- 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돌려댄다.
- 바) 몸에 상처가 있거나 옷이 찢어져서 집에 돌아온다.
- 사)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
- 아) 급우들에 대해 담임교사의 편애를 지적하며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 자) 용돈이 적다고 투정부리고 때로는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한다.
- 차) 과제물, 교과서 등이 없거나 책상, 노트, 가방 등에 낙서가 되어있다.

2) 따돌림 예방 방법

- 가) 겸손한 생활 태도로 친구를 사귀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 나) 남을 먼저 배려하고,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 줍니다.
- 라)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거짓말, 고자질, 이간질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마) 평소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 줍니다.
- 바) 자녀의 메모나 휴대폰 사용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사) 자녀와 어울리는 친구의 멘토가 되어 주세요.
- 아) 자녀의 단짝 친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부모와 상호 전화하세요.

3) 따돌림 피해 자녀, 대처 방법

- 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 나)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유, 가해자, 상태)을 확인하세요.
- 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도와주세요.
- 라) 자녀에게 힘들겠지만 함께 노력하여 이겨 내자고 말해 주세요.
- 마) 자녀가 긍정적 사고로 미래에 희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세요.
- 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상의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주세요.
- 사)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4) 따돌림 가해 자녀, 대처 방법

- 가)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 나)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 다) 자녀가 보인 폭력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 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마)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되 다정한 말로 지도하세요.
- 바) 문제가 해결되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펴보세요.

## 다. 언어폭력, 부모님의 모범으로 순화시킬 수 있어요.

### 1) 언어폭력이란?

위협적이고도 저속한 말이나 욕설 따위를 함부로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 특히 신체적인 약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일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도록 하는 말장난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2) 언어의 폭력적 내용

욕설하기, 위협하기, 협박하기, 저주·험담하기, 비웃기(희롱, 조롱), 이상한 소문내기, 약점 건드리며 놀리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흉내 내면서 놀리기, 신체 외모 놀리기, 옷차림 비웃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욕이나 비난의 문자 보내기 등

### 3) 언어폭력의 영향

가) 대인관계가 나빠집니다.

나)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줍니다.

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키워 갑니다.

라) 생활에 습관화되면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고 정서 장애를 유발합니다.

### 4) 언어폭력의 징후 점검사항

친구나 가족(형제·자매)과 대화(전화)할 때

가) 욕설을 자주 한다.

나) 빈정거리거나 면박을 준다.

다) 별명을 사용한다.

라) 욕설이나 비난의 문자를 보낸다.

### 5) 유소년기에 욕설을 하는 이유

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 또래끼리의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라) 습관화되면 기분이 좋아도 욕을 하게 됩니다.

마) 화가 난 상황에서 당장 분을 삭이기 위해 내뿜는 분풀이로 욕을 합니다.

### 6) 언어폭력 대처 방법

가) 고운 언어 사용,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 주세요.

나) 부모님의 언어, 자녀 언어생활의 거울입니다.

다) 자녀 말에 상처 주는 말은 삼가 주세요!

라)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적게 말하세요!

부모님이 무조건 야단을 친다고 해서 욕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정에서의 대화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욕을 자주 듣고 하다보면 도를 넘어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좋은 언어를 모방할 수 있도록, 고운 언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꾸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라. 성폭력, 대화와 소통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1)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 방법

- 가)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나)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 다)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 등 일상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 라) 가정, 학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2) 성폭력에 대한 통념 버리기

- 가)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 NO! 74%는 아는 사람, 13%는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 나) 장난인데 억울하다?
  - ➔ NO!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 NO!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 갔다고 해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의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3) 성폭력 피해 시 대처 요령

가) 성폭력 피해 징후

신체적 징후	심리적 징후	성적 행동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나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한다.</li> <li>• 밥을 먹지 않거나 갑자기 밥이나 다른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li> <li>• 손을 자주 씻는 등 청결에 대한 강박감을 행동으로 보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 증세를 보인다.</li> <li>• 평소보다 시무룩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li> <li>•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을 나타낸다.</li> <li>•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행동이나 성행위를 흉내 낸다.</li> <li>• 성기나 성행위 등에 과도한 호기심을 보인다.</li> <li>• 음란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li> </ul>

나) 성폭력 피해 자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①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고, 믿어 주고, 감사 주고, 보호해 줍니다.
- ②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이의 표정, 행동 등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 ③ 성폭력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며,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 ④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b>TIP, 꼭! 알아 두세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NE-STOP지원센터(☎117)</li> <li>•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li> <li>• 학교폭력SOS지원단(☎1588-7179)</li> <li>• 해바라기아동센터(<a href="http://www.forchild.or.kr">www.forchild.or.kr</a>)</li> <li>•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a href="http://www.sexoffender.go.kr">www.sexoffender.go.kr</a>) 등</li> </ul>

##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 가. 아동학대란? (법적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나.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라. 아동학대 신고 : 112

#### When

##### 언제?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 What

#####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How

#####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112

### 3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1



####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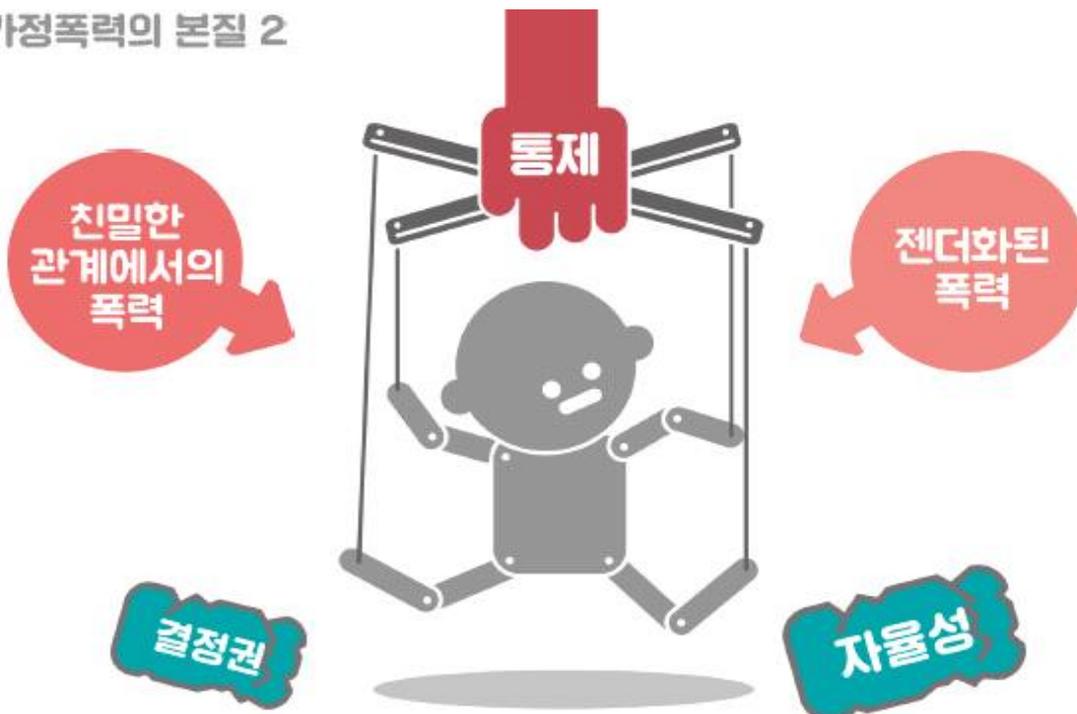


## 가정폭력의 본질 1



※ 「National Center on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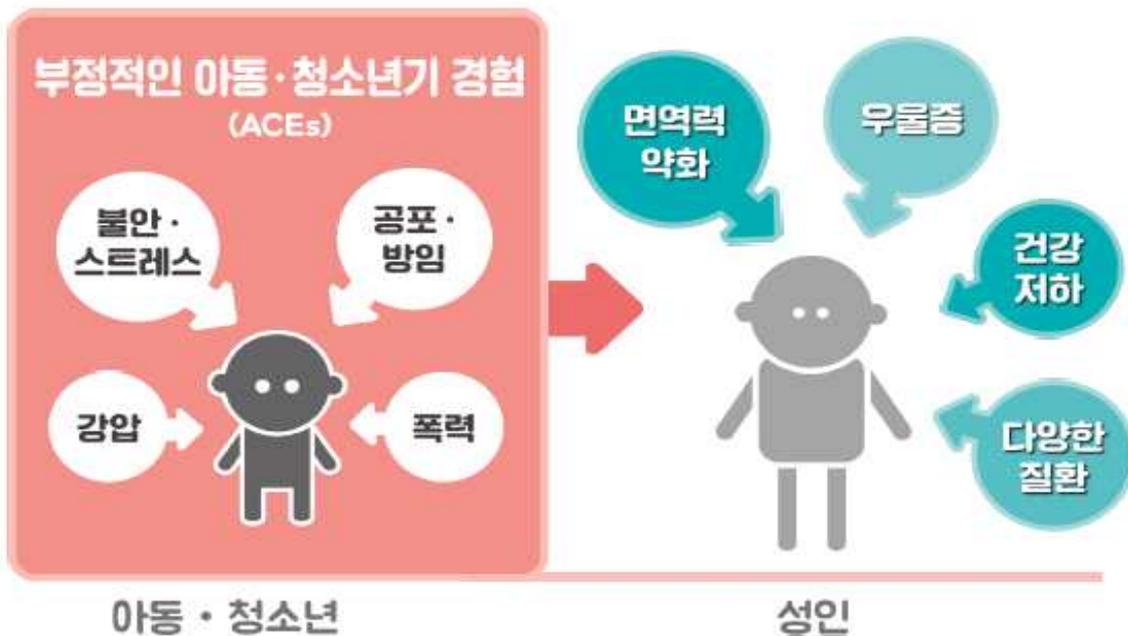
## 가정폭력의 본질 2



## 가정폭력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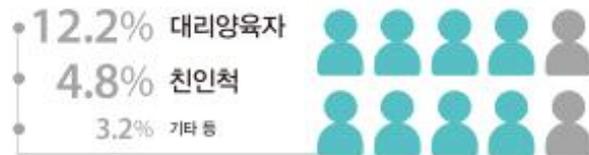


## 가정폭력이 끼치는 영향 1



※ Scott, B, Burke, N, Hellman, J, Carrón, V, Weems, C., 『The Interrelation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ithin an At-Risk Pediatric Sample』, Routledg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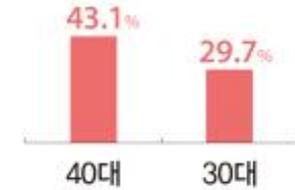
## 아동학대 현황



가해자  
성비



가해자  
연령



피해자  
연령



※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

## 가정폭력은...?



경제력·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난다?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다?

피해자들이 폭력을 유발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 NO,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경제력·학력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발생!

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

가정폭력은 상대방을 **통제·지배**하기 위해 발생. **피해자의 탓이 아님!**

##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110 (1366) 상담 및 지원 연계

긴급시 112!

##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경찰</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검찰</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피해자</span> </div>
<p><b>응급조치</b></p> <p><b>폭력행위의 제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와 분리 면담</li> <li>●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연계</li> </ul> <p><b>간급임시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li> <li>●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li> <li>●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li> <li>●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li> </ul>	<p><b>임시조치</b></p> <p>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신청) → 검사(청구)                      → 법원(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li> <li>●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li> <li>●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li> <li>● 의료기관에 치료위탁</li> <li>●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li> </ul>	<p><b>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직접 관할 법원에 신청</li> <li>●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격리·접근금지 등</li> <li>● 보호명령 청구</li> </ul>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가정폭력 예방 노력

- 상대방을 **소유·통제**하려 하지 않기
- **평등**한 관계 인식 노력하기
-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 **평등**한 가정 분위기 만들기
- 성 역할 **고정관념** 버리기
- 구성원 간 서로 **소통**하기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동적이고 판단력이 아직 미흡한 청소년들의 경우 '사고'에 이어 2번째 사망원인에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자살(자살시도)의 징후

#### ※ 위험 징후 식별의 중요성

- 자살을 시도하기 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자살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조기에 위험징후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심각한 자살 위험징후를 보일 때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 1) 언어적 신호 : 자살, 죽음, 자기비하적인 말이나 신체적 불편감 호소 또는 사후세계를 동경하거나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
  -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 나 같은 것은 살 가치가 없어요.
  - 사라져 줄게.
  - 내가 없어진다면 모두가 편안해지겠지?
- 2) 상황적 신호 :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되거나 어떤 문제가 지속될 때 자살위험이 높아짐
  - 가족 및 친구와의 갈등
  - 학업 및 성적 고민
  - 이성문제
  - 주변 지인의 죽음 경험
  - 신체적 질병이나 손상, 학대 등의 외상적 사건
  -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생활환경
- 3) 행동적 신호 :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이나 자해를 한 흔적 또는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함
  - 약물을 모아서 감추거나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준비함
  - 식사와 수면, 체중의 변화
  - 성적 하락, 지각, 조퇴, 결석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임
  - 자살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심취
  - 일기장, SNS, 블로그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한 표현
  -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내는 감정기복의 변화

## 나. 청소년 자살의 특징

구분	특징
높은 자살시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한 격동의 시기</li> <li>- 지적 변화로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도전하는 시기</li> <li>- 자아정체성이 발달되지 않은 정체성 혼란의 시기</li> <li>- 학교생활과 학업 스트레스 증가</li> </ul>
충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가치함을 느낄 때 충동적으로 선택</li> <li>-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질 때 충동적으로 선택</li> <li>-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이나 꾸중을 들을 때 충동적으로 선택</li> <li>- 순간적인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충동적으로 선택</li> </ul>
강한 전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암시성이 강함</li> <li>※ 피암시성: 타인의 암시를 받아들여 자신의 의견 또는 태도에 반영하는 성질</li> <li>- 연예인이나 추종자의 죽음의 영향(베르테르 효과)</li> <li>- 자살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li> <li>- 모방 자살, 동반 자살</li> </ul>
분명한 자살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통의 끝이나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선택</li> <li>-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음</li> <li>- 남에게 보복하려는 동기로 선택</li> <li>- 자신의 절망적 상황에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동기로 선택</li> </ul>
죽음에 대한 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타지 소설이나 인터넷 게임의 영향</li> <li>- 대중매체가 전하는 자살소식을 여과 장치 없이 받아들임</li> <li>- 죽음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 있음</li> <li>- 염세적 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동경</li> </ul>

## 다. 가정에서의 대처 방법

- 1) 자살 예고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다.
- 2) 만약 자살을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피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준다.
- 3) 놀라거나 비난하거나 혐오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4) “다 잘 될 거야”와 같이 무책임한 확신을 준다든가,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라는 진부한 소리를 늘어놓지 않는다.
- 5) 자살 예고 징후를 보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6)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를 파악한다.
- 7)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 8)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 9) 가족 구성원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라. 구조요청 전화 및 상담소 안내

- ▶ 헬프콜 청소년 전화(24시간 전화상담) 1388
- ▶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 ▶ 한국생명의전화 [www.lifeline.or.kr](http://www.lifeline.or.kr)/1588-9191
- ▶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suicideprevention.or.kr](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 자살징후 알리미 스마트폰 앱 '스마트안심드림'

### 가. 스마트안심드림

- 1)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수신되는 자살 관련단어 감지 및 부모 알림  
(사이버언어폭력 의심 문자 색출하여 부모에게 즉시 알림 기능)
- 2) 자녀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고민단어(자살관련) 감지 및 부모 알림

### 나. 주요 내용

- 1) 학생과 학부모의 휴대폰에 자살징후 알리미 앱(스마트안심드림)을 설치하여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수신되는 자살과 관련된 문자를 감지하여 학부모 휴대폰으로 전송
- 2) 자살징후 감지를 통한 학생자살 사전 예방 및 조기 치료 가능

### 다. 설치 및 이용방법

설치조건	▶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 설치 이용가능하며 통신사 구분 없이, 부모 명의 스마트폰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모두 설치 가능
설치방법	▶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스마트안심드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설치순서	<p>▶ 1단계: 부모님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li> <li>② 모드 선택 시 '보호자' 선택</li> <li>③ 서비스 이용 동의</li> <li>④ 비밀번호 등록</li> </ol> <p>※ 로그인 비밀번호로 이용되니 반드시 기억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자녀 휴대폰 번호 입력(스마트폰 기기만 설치)</li> </ol> <p>▶ 2단계: 자녀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li> <li>② 모드 선택 시 자녀 모드 선택</li> <li>③ 서비스 이용 동의</li> <li>④ 기기관리자 설정 시 실행 클릭</li> <li>⑤ 접근성 설정 '서비스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화면이 표시되면 동작 중</li> <li>⑥ 환경설정에서 설정 클릭 → 설치 완료</li> </ol>
이용방법	▶ 스마트안심드림 로그인 후 '자녀폰 관리'에서 '자녀고민 검색어'를 클릭하여 자살 관련 수신메시지 및 검색어 확인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10. 10. 5. 공포)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가. 학생인권이란

- 1)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성적,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명기회 보장 등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체계

- 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한 규범입니다.
-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총칙(제1조~제4조, 학생의 인권(제5조~제27조),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한 인권교육과 실천계획, 인권기구 등의 체계(제28조~제38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39조~제45조), 보칙(제46조~제47조), 부칙으로 총 5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 학교공동체의 책무

- 1)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학생인권 상담 주요 예시 및 판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을 앞 번호로, 여학생을 뒤의 번호로 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 하여 차별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성명 가나다 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다문화, 차이나,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를 직접 빗대는 등의 혐오표현을 한 경우
  -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그 자



체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학교 안 혐오현상과 교육의 과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도 혐오표 현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됩니다.”

-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간접체벌 포함)
  -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위의 경우와 같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금하고 있는 지도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특히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교실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외투 색을 제한하는 경우
  - 학생들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기호에 따라 외투를 입고 벗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2018년 이에 대해 편안한 교복 착용 측면에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집니다. 안전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절차를 밟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수학여행에서 일부학생의 음주를 이유로 전체학생 소지품을 동의 없이 검사한 경우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로 소지품 검사요건을 규정하고,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동의절차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일괄검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관련된 징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괄 수집한 경우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목적에 맞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허락 없이 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경우
  -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교복에 명찰이 박음질 형태로 고정적인 경우

- 성명은 개인 신상정보 중 가장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고정식 명찰은 원하지 않는 성명권의 노출을 야기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름의 노출로 인해 범죄 피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목걸이형과 같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명찰 위치 주머니 위에 덮개를 만들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6조)**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학생이 학교 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교사가 임의적으로 제거한 경우
  - 학교는 학생이 대자보를 게시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대자보 게시의 절차·방법·장소 등에 대해 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게시 글의 내용이 모욕, 명예훼손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지도가 가능합니다.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4조)**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여학생이 생리조 인한 고통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생리통으로 공결을 신청할 때 학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 학생의 생리공결 신청 시 병원 진료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여학생이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 1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검색하여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p>(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p>	<p>(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li> <li>-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li> </ul>

###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10.17.)이전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10.17.)이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 제17조
가능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 내의 봉사</li> <li>② 사회봉사</li> <li>③ 특별교육 이수</li> <li>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li> <li>⑤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sup>1</sup>에는 적용 안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에서의 봉사</li> <li>② 사회봉사</li> <li>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li> <li>④ 출석정지</li> <li>⑤ 학급교체</li> <li>⑥ 전학</li> <li>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li> </ul>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정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조치와 달리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기간의 출석정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침해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기간으로 부과하여야 징계양정에 있어서 위법이 없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필요적 병과), 전학 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병과). 단,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학 및 퇴학 조치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학 및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교원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경우와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의 경우에도 전학 및 퇴학조치가 가능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르면,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1)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 2)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 3)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 마.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성비위(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 성매매)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 성폭력은 학생들의 집, 학교 등 학생들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1 자주 발생하는 성 비위 행동은?

-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로 보냄
- 나.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
- 다.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짐
- 라.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 비위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자녀에게 반드시 지도하셔야 합니다.

### 2 성 비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라.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마.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 사.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아.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 3 성 비위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 가. 신고전화 : 관할경찰서 국번 없이 112
- 나.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성 비위 피해 관련 긴급 위기상담 및 신고전화
- 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02-338-5801 평일 10:00~17:00
- 라.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 범죄신고
- 마.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 가정 및 학교 근처 성범죄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

## 4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스마트폰 설치 및 이용방법」



①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 검색



② 본인인증



③ 지도검색



④ 성범죄자 확인

- 가.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 나. 알림기능으로 설정: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 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 촬영이나 소비(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되어 앞으로 스스로 찍은 촬영물 유포도 처벌되고, 영리 목적 유포의 경우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지며 전체적인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현황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디지털 세상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

- 가. 피해 알아차리기
- 나. 상담하기 : “말해도 괜찮아”
- 다. 신고하기 : 도와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등)
- 라. 디지털범죄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곳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

- : ☎02-735-8994(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 여성긴급전화 ☎1366

## 6 성매매 예방

### 가. 청소년 성매매 제대로 알기

- 1)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에는 보통 5가지 경로가 있다. (가출, 인신매매, 사이버공간, 친구의 유혹, 전단지)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사이버 공간으로,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방을 열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 제의가 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 2) 성매매 청소년의 90% 이상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의하는 경우가 성 매수 성인이 제의하는 경우보다 2배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3) 청소년 성 매매와 관련된 주요 현행법

항목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연령	만19세 미만	만20세 미만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별 차등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공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청소년	형사처벌 면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부과, 신상공개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해당사항 없음

#### 청소년 성매매란?

청소년 성매매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위해 금전이나 기타의 대가로 유인하여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 성매매는 성차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인권 침해입니다.

####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가출청소년은 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365일 24시간 쉴 새 없이 성매매를 위한 거래와 조건이 오가고 있습니다.

####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최초 성매매 피해연령	성매매 유입 경로	성매매 유입원인
평균 16.1세	인터넷 및 친구·주변 소개 70%	가출 후 생계비 마련

※출처 : 2012 성매매피해 청소년교육 등 지원사업 연차보고서

##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내가 청소년이라면?

- ▶ 청소년 성매매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 호기심으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만남 갖지 않기
- ▶ 알바 구할 때, 알바비(급여) 먼저 주는데 가지 않기
- ▶ 시급이 높은 사기광고에 속지 않기
- ▶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관심 갖기
- ▶ 돈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 갖기
- ▶ 성매매 알선 및 권유행위 신고하기

### 내가 어른이라면?

- ▶ 불건전한 접대문화, 향락문화 거부하기, 바꾸기
- ▶ 인터넷 성매매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 ▶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감시 및 신고하기
-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 성매매 알선 및 권유행위 신고하기

### 신고하기

- ▶ 신고전화 : 관할경찰서 국번없이 112
- ▶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범죄신고



### 1.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이 됩니다. 감염성 질환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만약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교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 법정 감염병 환자 및 법정 감염병 의심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감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2. 등교중지 방법

-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1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서류상 진단명 및 치료기간과 등교중지 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 3. 유의사항

- 감염병 의심 학생은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 합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며, 감염병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함)
- 등교 시 학생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로 제출합니다.
- 소견서 내 치료기간 동안은 학교에 나오면 안 되며, 학원도 가지 않도록 합니다.

### 4. 학생들에게 자주 발생 하는 감염병(증상,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감염병	임상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격리) 기간	잠복기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마스크 착용
감기균	발열, 기침, 객담 등 호흡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중지 안함	병원체마다 다양 (보통 2~14일)	X	O	O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년까지 가능 (50% 2년 이내)	O	O	O
급성 출혈성 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4일~1주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권장	8~48시간	O	O	X
노로 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24~48시간 (평균 33시간)	O	O	X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발생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7~20일 (평균 5~10일)	O	O	O

		4주 후 전염성 소실					
성홍열	미만성 구진,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1~3일	○	○	○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10~21일 (평균 14~16일)	○	○	○
수막구균성 수막염	두통, 발열, 경부 경직, 오심, 구토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10일 (평균 3~4일)	○	○	○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간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3~7일	○	○	○
<b>유행성 각결막염</b>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14일까지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권장	5~7일	○	○	X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발생 3일전부터 발생 후 5일까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14~25일 (평균 14~18일)	○	○	○
<b>인플루엔자</b>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b>유행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b>	1~4일 (평균 2일)	X	○	○
풍진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기증상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기기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14~23일 (평균 16~18일)	○	○	○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반점	발진발생 4일전부터 발진발생 4일후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7~21일 (평균 10~12일)	○	○	○

구분	<b>위급한 경우</b> <b>&lt;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 동행&gt;</b>	<b>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에 갈 경우</b> <b>&lt;학부모 동행&gt;</b>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li> <li>▶ 의식이 없거나 혼미</li> <li>▶ 출혈이 심한 경우,</li> <li>▶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심정지)</li> <li>▶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li> <li>▶ 열성질환, 단순 외상,</li> <li>▶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li> </ul>
후송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최초 발견자가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119 신고 및 보건교사에 연락</li> <li>★ 판단이 모호할 경우 문의전화 → 119 자문</li> <li>▶ 보건교사 → 담임교사 → 학부모연락</li> <li>▶ <b>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b></li> <li>▶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li> <li>▶ 교내 보고체계(사고경위, 후송병원안내) : 보건교사, 담임교사 → 교감 → 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교사 → 담임교사 → 학부모연락</li> <li>▶ <b>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b></li> <li>▶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경우 담임 동행</li> <li>▶ 보건교사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교내 대기 (단, 담임교사 부재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보건교사가 후송)</li> </ul>
119 구급대 후송기준	<p><b>☞ 119에 응급구조 차량 이송을 요청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이 혼미하거나 없는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 병원 후송 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li> <li>▶ 후송 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li> <li>▶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li> </ul> <p>①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환자를 일반차량으로 이송하여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119구급차에 비해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p> <p>② 병원 이송 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③ 이송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p> <p>④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p> <p>⑤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는 1339 또는 119에 전화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 및 학교장에게 알리고 당해 학교 이송지침에 의거 이송 조치</li> <li>·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여 빠른 이송이 필요한 경우 <b>최소 2명 이상이 동행</b></li> </ul>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공제회 신청 시 담임교사 또는 해당교과 교사는 <b>사고 발생 후 즉시</b> www.schoolsafe.or.kr에서 사고통지서 작성하여 내부결재 득한 후 보관 (단, 가해 및 개인 질병으로 발생한 경우는 안전공제회 신청에서 제외됨)</li> <li>▶ 병원 후송 시 응급처치 교사는 운전하지 않는다.</li> <li>▶ 보건교사가 후송하는 경우 보건실 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대행자가 담당</li> <li>▶ 보건교사는 응급환자 후송 및 응급처치 내용을 <b>보건일지 및 응급처치 기록지에 기록</b></li> </ul>	

## 10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교육

###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2.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b>주의보</b> PM <sub>10</sub> 150이상 또는 PM <sub>2.5</sub>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b>경보</b> PM <sub>10</sub> 300이상 또는 PM <sub>2.5</sub>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 및 예·경보 상황 확인 방법 >

#### □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 <a href="http://airkorea.or.kr">http://airkorea.or.kr</a> )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 시 안내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 발송

<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 시 2~6 km/hr, 자전거 운행 시 12~20 km/hr(성인 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11 정애 인식개선(이해) 교육

### 1.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장애인이 다시 생활하는 데 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1981년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장애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결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만년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었고, 네 손가락의 희아는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탄고등학교 학부모 여러분, <장애인의 날>을 기회로 자녀들이 장애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2. 장애와 관련된 Q&A

Q 1 :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인가요?

A : 아니요!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이라도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이면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장애인이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2: 지적장애와 자폐증은 치료될 수 있나요?

A : 아니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므로 치료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적절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것이지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자폐증을 앓다' 등의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텔레비전에서 자폐증이 나왔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데 그 사례에 나오는 자폐증은 자폐와 행동이 비슷하지만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유사 자폐 즉, 반응성 애착장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는 병이 아니므로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Q 3: 장애우? 장애자? 장애인? 어떤 표현이 올바른 것인가요?

A : '장애인'이 맞습니다.

'장애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는 한 단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퍼진 용어입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벗 우(友)를 사용해 '친구'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좋아보일지 모르나 이는 명백히 비장애인 입장만 담긴 말로 동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집단을 지칭하는 사회적 용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의 표현이 가능해야 하며 객관적, 주체적, 가치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체적인 표현이 아니며 장애인의 대인관계에서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우'라는 명칭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용어도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Q 4: 휠체어를 밀어줘도 될까요? 흰 지팡이를 잡아도 될까요?

A : 안됩니다!

휠체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거나 시각장애인의 지팡이가 바람에 크게 흔들리는 등, 이러한 상황이 돼서 곤란해 하고 있으면 그 장애인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도움이 혹시 필요하신가요?”, “제가 밀어드려도 될까요?”

장애인에게 이러한 보장구는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는 큰 실례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의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많이 느끼고 더디지만 대부분 혼자서 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견을 만지거나 안내견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의 눈을 만지진 않잖아요? 친절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장애인에게 오히려 큰 방해가 됩니다. 더불어,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함부로 일으켜 주지 마세요! 손상 부위에 따라 만지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일어나는 게 편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왼쪽 다리를 들어 주세요” 등으로 장애인이 먼저 요청할 때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관리 SW -

'사이버안심존' 설치 및 자녀폰관리 이용방법

📍 사이버안심존 설치하기

1. 부모님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을 먼저 설치한 후,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 1단계 : 부모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부모용)' 설치하기



## 2단계 : 자녀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자녀용)' 설치하기

**01** 자녀 스마트폰에서 국내 오픈마켓(1)에서 '사이버안심존(자녀용)' 검색 및 설치



**02**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사이버안심존(자녀용)' 실행

**03** 접근성사용, 사용정보접근허용, 기기관리자 설정, 앱정보 동기화 이후→설치 완료

**04** 사이버안심존 작동 중 (유해경보 차단 실행)

###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학교폭력 관련 상담 대표전화

기관	연락처	비고
스마트심센터	<a href="http://www.iacc.or.kr">www.iacc.or.kr</a> ☎ 1599-0075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상담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a href="http://www.safe162.go.kr">www.safe162.go.kr</a> ☎ 117	학교폭력, 청소년유해환경, 성범죄 등
학생위기 상담 Wee센터	<a href="http://www.wee.or.kr">www.wee.or.kr</a> ☎ 02-3444-7887	게임중독, 학교폭력, 진로 등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e콜림 cyber 1388)	<a href="http://www.cyber1388.kr">www.cyber1388.kr</a> ☎ 1388	청소년 고민 상담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진로 등)
청예단 학교폭력 SOS자원단	<a href="http://www.jkim.net/sos">www.jkim.net/sos</a> ☎ 1588-9128	학교폭력

## 2. 자녀 스마트폰에만 '사이버안심존(자녀용)' 설치하기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모님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녀 스마트폰>에만 설치하세요. (자녀폰 관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

01 자녀 스마트폰에서 국내 오픈마켓(1)에서 '사이버안심존(자녀용)' 검색 및 설치



02 스마트폰 해당화면에서 '사이버안심존(자녀용)' 실행



03 하단 회원가입 선택



04 약관동의



05 부모 정보등록 후, 하단 자녀정보등록하기 버튼 선택  
※ 비밀번호는 모르면 사용하지 않거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6 자녀정보 등록 후 다음 버튼 선택→설치하기



07 접근성사용, 사용정보검문 허용, 기기관리자 설정, 앱정보 동기화 설정 설치→설치 완료 확인



08 정상 작동 중 화면 확인 (유해정보 차단 실행)

**❗ 삭제 방법** · 자녀가 부모님 확인 없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이 삭제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부모님 확인 후 삭제방법을 적극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님 스마트폰에서의 삭제 방법은 일반 앱 삭제방법과 동일)

## 사이버안심존 '자녀폰 관리' 이용하기

사이버안심존(부모용)이 설치된 '사이버안심존'에서 로그인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자녀 스마트폰 이용현황



자녀 스마트폰의 이용시간관리, 앱 관리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스마트폰 이용시간 관리 · 앱과 인터넷사이트 이용시간 제한 설정/해제



### ④ 앱관리 - 자녀 설치 앱 목록 조회 및 선택적 차단/해제



01 앱관리에서 설치된 앱 내역 조회 및 이용을 제한하고 싶은 앱을 OFF→ON으로 변경(차단)  
 ※ ON(차단), OFF(이용 가능)



02 자녀와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이용시간 설정이 반영되며,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어 있을 경우 "요청중"으로 뜬



03 차단된 앱을 이용 가능 상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ON→OFF로 변경

### ④ 앱관리 - 앱별 이용시간 제한/해제



01 앱관리에서 설치된 앱 내역 조회 및 앱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앱 선택



02 제한하고 싶은 시간대를 차단시간에 입력하고, +를 누르면 2개까지 설정 가능



03 차단된 앱 시간을 해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X를 눌러 설정시간 삭제 후 재설정

### ☞ 자녀정보관리 - 자녀의 이용정보(앱, 인터넷사이트) 연령 등급 수정하기

'사이버안심존' 설치 시 '17세 이하 콘텐츠로 이용등급이 초기 설정되므로 자녀의 연령에 맞는 이용정보 등급으로 수정하여 이용하실 됩니다. (예. 자녀가 14세인 경우, '14세 이하 이용 콘텐츠로 등급 수정하면 14세 이하 콘텐츠에 한해 이용 가능)



01

### ☞ 자녀추가등록

자녀가 다수일 경우 <자녀추가등록>에서 자녀정보 등록 후 자녀 스마트폰에 <사이버안심존>을 설치하면 등록된 모든 자녀의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01

##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스몸비 방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행 중 잠금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모폰에서 자녀폰에 대한 보행중 잠금설정을 해주세요.



부모님 앱 로그인



02 자녀정보관리



03 보행중 잠금 설정(ON, OFF)

※ 자녀폰이 일부 보급형 단말기이거나 안드로이드버전 5.0 미만일 경우, 해당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보행중 잠금 기능(자녀폰)



10초 이상 보행 시 보행중 잠금 화면으로 설정



02 가입 시 등록된 부모전화번호로 연결가능



03 보행을 멈추고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잠금 해제 가능

#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및 자녀폰관리 이용방법

## 스마트안심드림 설치하기

부모님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을 먼저 설치한 후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하세요.

### 1단계 : 부모님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01 부모님 스마트폰의 국내 오픈마켓(마켓스토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검색 및 설치



02 스마트폰 메인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



03 Loading 화면



04 모드 선택(보호자모드 선택)



05 서비스 이용 동의



06 비밀번호 등록 후 <확인> 버튼 선택

※ 로그인 비밀번호로 이용되오니 기억하십시오



07 자녀 휴대폰번호 입력하여 자녀 등록

※ 자녀는 반드시 스마트폰 기기만 설치 가능합니다.

## 2단계 : 자녀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01 자녀 스마트폰의 국내 오픈마켓(윈스토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검색 및 설치



02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



03 Loading 화면



04 서비스 이용 동의



05 기기 관리자 설정



06 결근율 설정  
\* 서비스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화면이 표시되면 동작 중입니다.



07 설치완료

## 스마트안심드림 '자녀폰 관리' 이용하기

###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 조회하기

자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SMS로 수신하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가 포함된 문자내용을 부모에게 알려드립니다. (부모앱의 설정에서 '실시간' 또는 '1일 1회 수신'으로 수신방법 변경 가능)



### 자녀고민 검색어 조회하기

자녀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교폭력 등 고민단어를 검색할 경우 검색한 단어와 조회한 인터넷 사이트를 부모에게 알려드립니다. (부모앱의 설정에서 '실시간' 또는 '1일 1회 수신'으로 수신방법 변경 가능)



## I.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 가. 개념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

## 나. 목적

-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 II. 공교육 정상화법, 이렇게 운영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li> <li>△ 입학예정 학생 대상 예비수업은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 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li> <li>△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li> <li>△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 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li> <li>△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 시 학생 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li> </ul>

## III.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초·중·고등학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교	대학별 고사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IV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Q.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에는 계획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V.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예외

-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 교육원)의 영재교육
-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 △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안내

### -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입니다.

2)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기본방침

- 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나)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 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다)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2)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가) 분야

-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나) 절차

-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3)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1)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가)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 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또는 자녀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 나)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다)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 라) 학교운동부의 경우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 다.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2)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라.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http://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http://www.epeople.or.kr) → 민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http://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mailto:hakbumo@hanmail.net))

### 가. 학교에서 물건 구입, 공사, 용역 계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물건 구입, 공사, 용역 계약을 추진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 전자계약이란?

학교·공공기관이 물품 구입, 공사·용역의 계약 추진 시, 업체가 학교·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입찰 및 계약, 대금청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전자계약 추진배경 및 장점

- 1)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학교·공공기관은 업체와 직접 만나 계약업무를 추진해야 되므로 투명성 및 청렴성이 저해될 수 있음
- 2) 여러 업체의 경쟁이 필요한 경우, 전자입찰 프로그램 사용하여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임
- 3) 학교·공공기관에서 물품, 공사,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라. 전자계약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지정정보처리장치)

사이트	사용기관	기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 시 이용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급식 물품 구입 시 이용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처분 시 이용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6년에는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에서 전 세계 공공기관 중에서 IT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례로 선정되어 'Global IT Excellence'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활성화 전자상거래 이사회(AFACT)에서 공공분야 전자상거래 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07 e-ASIS'를 수상하며 최고의 전자정부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해외 총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으며, 25개국(27건)과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조달청 블로그 발췌 -

**학교는 전자계약을 통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투명성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 학부모회 구성 목적**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

**나. 임원 구성**

-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
- 3)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씩 등록 시 무투표 당선
- 4) 감사 1명을 두되 회장이 지명
- 5) 학부모회 임원은 학년 및 학급 대표 겸직 가능

**다. 임원 임기**

-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년도 정기 총회일까지(1차에 한해 연임 가능)

**라. 학부모회 조직**

- 1) 총회와 대의원회
- 2)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급별, 기능별 학부모회

**마. 총회 소집**

- 1) 총회는 매년 3월 소집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의 의결로 요구할 때, 의원 1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바. 총회의 의결 사항**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사항
- 3) 임원 선출
- 4) 예산 및 결산 보고
- 5)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대의원회**

- 1) 구성 : 임원, 학년 학부모회 대표, 학급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
- 2) 회장 :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

**아. 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 학부모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학년 대표와 학급 대표는 겸직 가능

**자. 기능별 학부모회**

- 가족봉사단(학부모 봉사단)은 1,2학년 희망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하고 가족봉사단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봉사단에서 선출하고, 학년 대표와 학급 대표는 겸직 가능

# [부록] 학교 학급 교실 배치도

